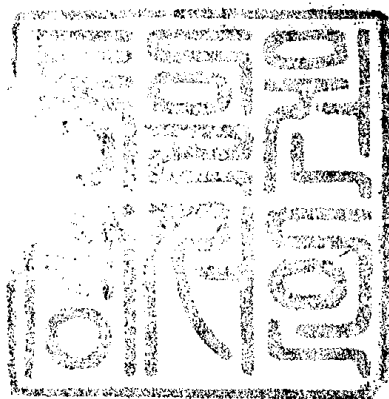


# 중국·대만관계 현황과 교훈

1994. 12



통 일 원

- 0 이 책자는 통일원의 『'94 중국·대만관계 실무정책 협의회』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0 통일원은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통일된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대만과의 실무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0 본 책자가 분단국의 통일 및 남북한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 목 차 》

I. 중국·대만관계 현황과 교훈 .....	1
1.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	3
2. 兩岸關係 현황 .....	6
3. 兩岸間 대화 .....	13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5
II. 관련 참고 자료 .....	25
1. 중국·대만 개관 .....	27
2. 중국의 『통일백서』 .....	31
3.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	91
4. 대만의 『통일백서』 .....	95
5.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기구 .....	123
6. 兩岸關係 현황자료(통계) .....	131
7. 홍콩반환에 관한 英·中협정(요약) .....	147

## I. 중국·대만관계 현황과 교훈

# I. 중국·대만관계 현황과 교훈

## 1.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 가. 기본입장

#### < 中國 >

- 0 『臺灣問題』의 근본원인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과 國共內戰 과정에서 서방국가의 內政干涉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
  - 兩岸의 통일을 통해 『臺灣問題』를 해결, 민족통합, 자주성 회복, 영토보존을 실현
- 0 兩岸의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만의 『1個 中國』원칙 수용, 통일문제에 대한 外勢 不介入 입장 견지

#### < 臺灣 >

- 0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는 하나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民主·自由·均富』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
- 0 통일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적 협상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나, 중국의 武力使用 포기, 대만의 政治實體 및 國際社會活動 인정없이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나. 統一政策

### < 中國 > : 『一國兩制』 통일방안

- 0 『1個中國』 : 세계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北京政府가 중국을 대표하는 唯一合法 정부
- 0 『兩制共存』 : 하나의 중국안에 대륙의 社會主義制度和 대만의 資本主義制度가 장기간 공존, 공동 발전을 추구
- 0 『高度自治』 : 兩岸의 정치적 통합하에 『兩制共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特別行政區』 방식 추구
- 0 『平和談判』 : 中國共產黨과 國民黨間의 黨對黨 담판을 통한 『제3차 國共合作』을 통한 통합추진

### < 臺灣 > : 『一國兩區』 통일방안

- 0 理性 (Reason), 平和 (Peace), 對等 (Parity), 互惠 (Reciprocity)를 전제로 적절한 기간의 交流·合作·協商 및 民主·自由·均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一國兩區』를 실현
- 0 통일추진단계를 ① 교류·호혜단계 (民間交流), ② 상호신뢰·합작단계 (政府間接觸), ③ 統一協商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주요 정책방향과 전제조건을 제시

< 통일정책 비교 >

구 분	중 국	대 만
통일원칙 · 기본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중국</li> <li>-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중국</li> <li>-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li> <li>* 對等, 尊重, 互惠</li> </ul>
통일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國兩制</li> <li>- 양 제도 공존통일</li> <li>- 『特別行政區』 (主從關係)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國兩區</li> <li>- 독립적 정치실체 공존</li> <li>- 홍콩식 『特別行政區』 지위 거부 (대등한 정부 · 지역관계)</li> </ul>
통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li> <li>- 무력사용 가능성 유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 평화통일, 제도 통일</li> <li>- 『3和政策』 (『평화공존, 평화경쟁, 평화통일])</li> </ul>
통일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通』, 『4流』를 통한 평화통일여건 조성 단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민간교류→정부 간 접촉→통일협상) 설정</li> </ul>
통일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중국건설을 통해 國家主權 수호, 領土保存</li> <li>○ 一國兩制하에서 중화 민족 진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전역에서 『四大化』 (정치적민주화, 경제적자유화, 사회적다양화, 문화적중국화) 실현</li> <li>- 민주 · 자유 · 군부의 통일중국 건설 (國家富強, 民族富裕)</li> </ul>

※ 별첨자료 중국의 『統一白書』 (93. 8. 31), 대만의 『國家統一綱領』 (91. 3. 14) · 『統一白書』 (94. 7. 5) 등 참조

## 다. 통일정책 추진기구

구 분	중 국	대 만	비 고
최고 정책 결정기관	中央臺灣工作領導小組 (조장: 江澤民 주석)	국가통일위원회 (주임: 李登輝 총통)	최고 지도부내 협의체 또는 자문기구
총괄·조정 집행기관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행정원 대륙위원회	행정부내 부처 (통일원과 유사)
접촉·협상 기구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協會)	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	半官半民 기구 『3通』 및 회담 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5』 참조

## 2. 兩岸關係 현황

### 가. 變化過程

- ① 중국의 『3通 4流』 (通商·通航·通郵, 經濟·文化·科學技術·體育交流) 정책과 대만의 『3不政策』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의 대립
  - 중국의 臺灣問題 해결방식이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되면서 『黨對黨 談判』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과 양안간 교류·협력 제의
  - 대만은 美·中修交('79) 등으로 인한 『孤立과 危機』 상황에서 중국의 각종 제의를 거부하면서 대내 안정 확보에 주력



## ② 비정치적 · 민간차원의 교류 · 협력 확대

- 0 '87년 대만의 폐쇄적인 대륙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국내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등 대륙정책 전환을 추진
  - 친척방문 등을 통한 인적교류는 다각적인 양안교류 · 협력을 촉진, 斷絶 · 孤立의 兩岸關係를 교류 · 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

## ③ 교류 · 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개선 모색

- 0 '90년이후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에 따라 兩岸間 교류 · 협력의 확대 · 제도화와 함께 정치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대만은 기존의 비현실적 · 수세적 입장을 지양, 새로운 차원의 兩岸關係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통일추진 기구와 『國家統一綱領』, 『人民關係條例』 등의 각종 통일지침을 제정 · 시행
  - '93. 4 중국의 『海協會』 (회장: 王道涵) 과 대만의 『海基會』 (회장: 辜振甫) 와의 『王辜會談』 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나. 兩岸關係 현황

- 0 중국 · 대만관계 변화는 어느 일방의 적극적인 노력보다 이념의 틀속에 얽매어 있는 기존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쌍방의 인식전환에 기인

- '90년이후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문제를 『解放』 또는 『收復』의 개념이 아닌 평화적·이성적 통합차원으로 인식
- 쌍방은 兩岸關聯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점차 현실적·경제적 요구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정치와 비정치를 엄격히 구분)
- 0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인적·물적교류, 사회문화교류, 半官機構의 접촉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룩

### < 人的交流 >

- 0 '80년대에 비공식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적 교류는 '87년 대만이 친인척의 本土訪問을 허용하고 중국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활성화
- 대만 국민당내 진보·보수세력간의 논란중에서 蔣經國 총통은 대내 정치개혁과 대륙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대륙 방문 허용을 결정
- 이에 대해 중국 國務院은 特別談話를 통해 모든 편의 제공(대륙주민과 동등대우 등)을 약속
- 0 초기 대만정부가 허용한 방문 범위는 3촌이내의 친척과 배우자(현역군인, 공무원 제외)로 제한하고 대륙거주 중국주민의 대만방문을 극히 제한한 것이었으나 대륙주민의 問病·問喪을 위한 방문허용('88)에 이어, 해외거주 학자, 해외유학생의 대만방문을 허용

- 0 '90. 8 이후에는 대만이 중국공산당원의 대만방문, 대만 공무원의 대륙내 친척방문도 허용하면서 양안간의 인적 교류가 급속히 발전
- 0 중국은 『3通 4流』의 통일전략에 따라 대륙친지 방문객은 물론 공무원·기업인·일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
- 0 交流現況 : 대만 → 중국('94. 7 현재 총 6, 611, 400명)  
중국 → 대만('94. 9. 30 현재 총 77, 930명)  
※ 첨부자료 6 (양안관계 현황통계) 참조

### < 經濟交流 >

- 0 양안간 경제교류는 쌍방의 利害關係가 일치하는 부분으로 兩岸關係 축진의 중요요인이자 관계발전의 지표
  - 중국은 체제전환과 개방·개혁 확대를 위한 대만과의 교역을 중시
  - 대만도 세계경제의 불려화, 보호무역 강화추세에서 양안 경제교류에 대한 經濟界의 요구를 수용
- ※ 중국·대만은 홍콩·마카오 및 동남아 화교경제권을 포함하는 『中華經濟圈』 형성을 적극 모색
- 0 특히 중국의 대만기업 전용공단 조성, 투자편의·특혜 제공 등 경제교류 강화정책으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 증대와 함께 투자업종·규모·지역 등 그 범위가 급속히 확대
- 0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정보부족, 법제도 미비, 보호조치 미흡 등과 함께 대만의 대륙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만은 양안간 교역량을 총교역량의 10% 이내로 제한

- 0 대만의 對중국 교역량 : 약 75억\$('93년)
- 대만의 對중국 투자액 : 약 50억\$('93년)

## < 社會文化交流 >

- 0 양안간 사회·문화교류는 쌍방간의 정치적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뿌리깊은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형적 교류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
  - 중국은 사회·문화교류에 따른 『和平演變』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대만내 분리 독립분위기 억제를 기대
  - 대만은 중국의 統一戰線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대륙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 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 0 중국·대만은 사회·문화교류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威脅要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술·언론·문화·체육교류를 확대·발전(제반 교류협력 현황은 별첨자료 5 참조)
  - 대만은 인적교류, 청소년교류, 과학기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5년중 36개 각종 단체가 중국방문 예정

## 다. 최근 兩岸關係 動向

- 0 중국·대만간 비정치적 민간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중국은 대만의 國際社會 복귀 움직임에 대해 무력시위와 함께 대만 고립화정책을 강화
  - 대만은 對중국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UN가입을 위한 외교활동과 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는 등 정치적으로 대립

## < 중국의 對臺灣 고립화 >

- 0 중국은 『대만 고립화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대만독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제재한다』는 대만 고립화 계획을 수립 (9. 8 SCMP지)
- 0 대만의 『2個中國』 고집시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 (9. 12 錢其琛 외교부장) 하면서 지난 6월이래 대만 주변해역에서 전투기 200대, 함정 50여척 등을 동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 0 최근에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와 일본측에 대한 압력을 통해 李登輝 대만총통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개막행사 참석을 저지

## < 臺灣의 對應 >

### 0 對中國 政策 再檢討

- 대만은 중국의 대만고립 노력이 대만인들의 독립요구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9. 17, 胡志强 정부대변인)
- 중국의 압력으로 李登輝 총통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참석이 좌절 (9. 19, 이총통의 방일계획 취소 공식발표) 됨에 따라 중국과의 제반교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대륙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방침 (9. 19 高孔廉 대륙위원회 부주임) 을 천명
- 언론사 간부 등 23명으로 구성된 언론 대표단이 방중 일정 (9. 15-24) 을 단축, 조기 귀국 (9. 21)

## 0 UN 再加入 추진

- 대만 입장 지지확보를 위한 집권 국민당 대표단 주최 세미나 개최 (워싱턴)에 이어 정부대변인 (9. 17) 및 의회대표단 (9. 20)을 미국에 파견
- UN측에 『1個 中國』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UN가입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 (9. 19)
- ※ UN총회 운영위는 대만의 UN가입 검토안을 금년도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 (9. 21)

## 0 국제사회 복귀노력 강화

- 駐美대표부 명칭을 『北美문제협력위원회』에서 『대북 경제·문화 대표처』로 개칭하는 등 대미관계 격상 (9. 7) 및 캄보디아와의 상호 대표부 개설 합의 (9. 10)
- UN·GATT 가입 노력과 함께 李登輝 총통의 제2차 APEC 정상회담 (11. 15, 인도네시아) 및 訪美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복귀활동을 적극화

## 0 방위력 강화

- 중국이 지난 6월이래 대만 주변해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잇달아 실시한 것과 관련, 대만침공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경고 (9. 3 劉和謙 군 참모총장)
- 프리깃함 및 신형 공격용헬기 도입, C-119 수송기의 전폭기 개조 등 군사력 증강계획을 발표 (9. 22 孫震 국방부장)

## < 李登輝 총통의 頂上會談 제의 >

0 李總統은 江澤民 주석과의 회담은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APEC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행사가 대북이나 북경 어느 곳에서 열리는 江主席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정상회담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결코 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 張豐緒 대만 올림픽위원회 주석은 8월말 비밀리 방중, 아시안게임 또는 APEC 같은 국제행사를 이용해 중국·대만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의 (10. 10 莊彥士 총독부 비서장)

0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 8 李登輝 총통의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식 頂上會談 개최 제의 (10. 4) 를 단호히 거부

- 중국은 대만 총통을 국가수반이 아닌 국민당 주석 또는 台灣省의 지방정부 首長으로 간주, 『1個 中國』 원칙하에 黨對黨 차원의 회담추진 입장을 견지

## 3. 兩岸間 대화

0 '79년 이후 계속된 중국의 제3차 國共合作을 위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黨對黨 회담제의에 대해 대만이 거부함에 따라 아직 黨對黨 또는 정부간 접촉은 부재

0 그러나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비공식 물밑대화로는 統制·管理에 한계가 있어 교류·협력 제도화와 상호 이해와 현안을 협의·조정할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

- 중국은 투자보장을 요구하는 대만의 3不政策의 변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화채널 확보 필요
- 대만은 대규모 대륙투자로 경제의 성패가 중국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投資保障 등의 해결책이 절실하고, 중국과의 정치대화를 통해 대외관계 회복 및 정치적 실체 확보를 겨냥
- 0 이에 따라 중국·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간 접촉을 대행할 수 있는 半官半民 성격의 중재기구인 『海協會』 (91. 12) 와 『海基會』 (90. 11) 를 설립한 후, 양 기구의 책임자간에 93. 4 싱가포르에서 소위 『王辜會談』 을 개최
  - ※ 중국 『海協會』 회장 (王道函) 과 대만 (海基會』 주임 (辜振甫) 은 양측 최고책임자의 핵심측근
  - 0 『王辜會談』 에서 쌍방은 『海協會』 와 『海基會』 간의 회담 정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범죄·분쟁 처리, 대륙진출 대만기업의 투자보장문제 등을 논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4개의 합의서를 채택
    - 회장급 년1회, 부대표급 년2회, 실무급 년4회의 회담 정례화에 합의
    - 분쟁처리, 투자보장 문제는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협정을 국내차원에서, 대만은 대등한 정부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해결 지연
  - 0 『王辜會談』 의 합의에 따라 실무자급 회담과 부대표급 회담을 통해 불법입국자, 중국항공기 납치범 송환, 어로분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94. 8. 4~8. 7간 대북에서 개최된 실무회담에서는 3個 懸案解決을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



- 그외에 학생교류, 유적 공동조사, 과학정보교류 등에  
  잠정 합의하고 상대방 지역에 언론사 사무실 설치에도  
  합의
- 대만 경제인의 신변보호와 투자보장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결정
- 0 중국·대만간의 대화는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接觸·談判  
  ·妥協을 거부하는 3不政策을 고수하는 한, 양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상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海協  
  會와 海基會가 양안간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접촉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0 결론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교류·협력과 접촉의 확대라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정치적 대립관계를 해소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쌍방의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  
  를 안고 있는 실정
-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中國』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합의와 『兩制』  
  와 『兩區』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0 한편, 중·대만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  
  적 안정 유지,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및 平和定着에  
  대한 입장의 절충, 대외적인 통일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국적 특색을 지닌 양안의 統一方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

#### 4.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 0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통일에 대한 상호인식, 국제적 지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름
- 0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대만 공히 이념·체제의 대립을 장기간 경험하였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民族和解·民族統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을 공유
- 0 이런점에서 정치·이념적 제약속에서 추진된 중국·대만의 交流·協力 성과와 그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쌍방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示唆點을 제공

① 상이한 두 체제의 關係變化를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政策決定 과정에서 이념적 요인보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된 現實的 요인을 중시하는 認識變化가 불가결

- 0 중·대만 관계의 발전은 양안관계와 관련된 중·대만의 현실적·이성적 정책전환에서 비롯됨
  - 중국은 臺灣解放이란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우선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兩岸關係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 대만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대만의 정치·경제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인식에서 兩岸交流를 수용
- 0 특히 중국은 대만의 政治實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융통성있는 조치를 강구
- '94. 3. 5, 『中華人民共和國 臺灣同胞投資保護法』 제정 등

⇒ 남북한의 경우, 특히 북한지도부가 여전히 정치·이념적 요인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의 현실적 전환,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

② 政策轉換과 關係變化는 쌍방의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가 각자의 정치·경제적 存立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共同認識에서 가능

- 0 중국은 서방세계로부터의 『和平演變』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自身感과 이미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왔다는 확신에서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 0 대만은 교류과정에서 중국의 統一戰線 기도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었지만 本土와의 교류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
- ⇒ 북한의 開放·改革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결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危害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

북한의 대서방 接觸·交流를 적극 지원하는 등  
『平和的 履行』에 대한 북한의 危機意識과 의구심  
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③ 人的交流는 교류·협력의 始發點이자 확대요인으로  
작용, 상호 關係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87. 10 대만의 대륙내 親戚訪問 허용이후 활성화된 인적 교류는 단순한 인적왕래에 그치지 않고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는 橋梁的 역할을 수행
- 이산가족 상봉, 양안주민의 적대감 완화, 양안간의 緊張緩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안관계 변화기반을 조성
  - 친척방문 기회를 통해 取材, 學術, 貿易, 投資 등 친척방문의 기본취지와 관련없는 목적을 수행, 대만정부의 『三不政策』, 『三通不許』 등이 양안교류·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 ⇒ 북한이 남북한 인적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憂慮를 불식시키는 노력  
과 함께 북한의 變化開放 추이에 부합하는 점진적인  
人的交流 방안을 적극 모색

④ 상호간 정치적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海外僑胞들을 각자의 立場과 政策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

- 0 중국·대만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국 국적의 학자·정치인·기업인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책방향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
  - 0 또한 홍콩, 싱가포르 등 華僑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가 양안교류·협력의 중개지, 대립·갈등의 緩衝地帶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홍콩은 방문·교역의 중간 경유 또는 중개지, 양안교류지, 쌍방 정보수집지로서의 활동공간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중국·대만의 직접적인 마찰을 최소화
    - '93. 4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王辜會談』의 성사에는 싱가포르 李光耀 수상이 지대한 역할을 수행
- ⇒ 남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海外僑胞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일방적으로 支持·擁護토록 설득하고 교포단체·주요인사의 성향을 구분하여 대하는 자세를 지양

우리의 立場과 政策方向을 북한에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民族和合의 동반자로서의 僑胞社會 형성을 지원 (남·북한, 교포가 함께 참여하는 각종행사 지원 등)

※ 중국내 朝鮮族의 경우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차원의 『放任政策』에 매우 불만스런 태도를 표출

⑤ 정치·비정치분야, 政府와 民間次元을 분리, 우선 실현 가능한 교류부터 추진하되 交流·協力이 본격화된 이후 야기될 문제에도 대비

- 0 중국과 대만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懸案의 완전한 해결에 집착하여 모든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정치·비정치, 정부·민간분야의 分離를 통해 우선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 0 그러나 양안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비정치분야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
    - 海協會, 海基會와 같은 半官機構의 협상을 통해서도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분규·마찰의 해결에 한계 노정
    - 교류 확대과정에서 정부가 現況 파악조차 못하는 등 規制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 남북한도 정치적 현안의 先決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보다는 정치·비정치분야의 分離를 통해 우선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調整·統制되도록 하는 事前對策 강구 필요

⑥ 對北 경제교류 · 협력과정에서 政府와 企業간 공동보조  
유지 필요

0 중국 · 대만의 교류과정에서 兩岸關係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經濟問題에 집중되고, 특히 대만의 각 기업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무분별한 경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葛藤 야기

-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닌 지방정부, 기업, 개인차원에서 양안간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개방정책의 혜택이 大都市나 臺灣隣接 해안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간 · 계층간의 갈등 유발

- 대만의 경우 대만주민,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양안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法制度가 미비된 상황에서 便法을 통한 경제교류의 확대로 여러가지 부작용 유발

⇒ 향후 對北 경제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우선 정부가 관련기업들과 충분히 협의, 意見收斂 과정을 거쳐 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각 단계의 경제교류 主體, 範圍 · 規模 등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

⑦ 상대방 政府 혹은 權力主體보다 일반 住民에 비중을 두는 政策代案 강구

0 중국은 국민당 정부와 대만주민을 구분하고 대만은 중국 공산당정권과 大陸住民을 구분함, 비록 상대방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적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一般住民들의 관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면서 대만주민들에 대해 자신들의 새로운 對대만정책, 統一政策 방향을 인식시키는데 역점을 둠

- 대만 또한 中國大陸의 일반주민을 겨냥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 등 대륙주민들의 對臺灣觀을 변화시키는데 주력

⇒ 우리의 경우도 統一政策의 적용대상을 北韓政權으로 제한하기보다는 北韓住民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政策代案 모색 필요



⑧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의 基本方向과 原則을 확고하게 견지

0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과 관련된 原則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쌍방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政策推進 과정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

- 양안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상의 단호함』과 『정책추진상의 유연함』을 병행하여 적용

⇒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原則과 基本方向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내외적인 統一基盤 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⑨ 統一政策에 대한 체계적인 對外홍보

0 특히 대만의 海基會와 大陸委員會의 경우, 自國의 통일 정책과 양안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說明資料(영문)를 다양한 형태로 정리, 국민은 물론 동 機關을 방문하는 外國 인사들에게 배포

⇒ 중국인들(특히 조선족)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마치 남한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홍보가 필요  
이와함께 統一政策과 남북현안 등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요령있게 정리한 자료를 개발, 우리원을 방문하는 내외인사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 Ⅱ. 관련 참고 자료

1. 중국·대만 개관
2. 중국의 『통일백서』
3.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4. 대만의 『통일백서』
5.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기구
6. 兩岸關係 현황자료 (통계)
7. 홍콩반환에 관한 英·中협정 (요약)

[ 자료 1 ]

중국 · 대만 개관

1. 중 국

< 일반사항 >

- 0 국 명 :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0 건국일 : 49. 10. 1
- 0 수 도 : 北京 (인구 1, 087만명, 90. 7)
  
- 0 면 적 : 약 960만km<sup>2</sup>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남북 : 남사군도 (23 ° N) ... 흑룡강 (53 ° 32 ° N), 5, 500km
  - 동서 : 파미르고원 (73 ° E) ... 우수리강 (135 ° E), 5, 500km
  
- 0 인 구 : 11억 5, 823만명 (91. 12월)
  - 년평균 인구증가율 1. 2%
  
- 0 민 족 : 漢族 등 56개의 다민족국가
  - 漢族 : 10억 4, 248만 (전인구의 92. 0%) ※ 90년 7월
  - 55개 소수민족 : 9, 120만명 (전인구의 8. 0%) ※ 90년 7월
    - 朝鮮族 : 192만명으로 소수민족의 2. 6% (북경에 약 10, 000명) ※ 90년 7월
  
- 0 언 어 : 한어 (중국어) 사용 (단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 0 문맹율 : 15. 9%
  
- 0 영 해 : 12해리 (1958. 9. 4 선언, 1992. 2. 25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정 공포)
  
- 0 국정공휴일 : 신정 (1. 1), 춘절 (음력 1. 1-3), 노동절 (5. 1), 국경절 (10. 1-2)
- 0 종 교 :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 < 정치 · 경제 · 군사 >

### 가. 정 치

- 1) 人民共和制
- 2) 주요지도자

- o 사실상 최고 실권자 : 덩소평 (Deng Xiaoping)
- o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 강택민 (Jiang Zemin)
- o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강택민 (Jiang Zemin)
- o 국무원총리 : 이봉 (Li Peng)
- o 국가부주석 : 영의인 (Rong Yiren)
- o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 교석 (Qiao Shi)
- o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 이서환  
(Li Ruihuan)
- o 외교부장 (부총리 겸임) : 전기침 (Qian Qichen)

### 3) 주요정책

- o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추진
- o 대륙 · 대만간 국가통일 실현 (1국 2체제 방식)
- o 패권주의 반대, 세계평화 옹호

- 4) 주요정당 : 중국공산당, 그외 국민당 혁명위원회 등  
8개 민주당파

### 나. 경제 (93년도)

- o G N P : 약 5,446억\$
- o 1인당 GNP : 462\$
- o 무역 : 수출 1,040억\$, 수입 918억\$
- o 화폐단위 : 원 (Yuan 또는 Rmb), 1\$ = 8.32원 ('94.11현재)
- o 물가상승율 : 13%
- o 경제성장율 : 13.4%

다. 군사력 : 302만명 (91-92 Military Balance)

- 0 육군 : 230만명
- 0해군 : 26만명
- 0공군 : 47만명
- 0제2포병 : 9만명

라. 행정구역

1) 省 級 : 22개성, 3개 직할시, 5개 자치구

- 0 3개 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 0 5개 자치구 : 내몽고, 신강위그르, 서장, 광서장족, 녕하회족 자치구

0 22개 省

- 화북구 : 하북성, 산서성
  - 서북구 : 협서성, 감숙성, 청해성
  - 동북구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화동구 :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둥성
  - 중남구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해남성
  - 서남구 :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2) 地 級 : 113地區, 30자치주, 8맹 (내몽고), 185시 : 총 336

3) 縣 級 : 260시, 1,748현, 114자치현, 61旗, 3自治旗, 3특구  
1공업구, 1林區 : 총 2,181

4) 市轄區 : 35직할시 시할구, 615성 (자치구), 할시시할구  
: 총 650

5) 鄉, 鎮 (鄉은 농촌의 말단조직이며, 鎮은 도시의 말단조직)

## 2. 대 만

- 0 공식명칭 : 대만 (Taiwan)
- 0 정 체 : 입헌민주공화제, 총통제, 5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
- 0 수 도 : 대북 (인구: 94년 현재 266만)
- 0 주요도시 : 高雄 (까오슝), 台中 (타이쑹), 台南 (타이난),  
基隆 (지룽)
- 0 면 적 : 약 3, 6만km<sup>2</sup> (대륙의 0. 3%)  
- 대만섬과 79개 대소 도서로 구성
- 0 인 구 : 2, 097만명 (대륙의 1. 8%)  
- 대만섬 출신 85%, 대륙본토 출신 14%, 고산족 1%
- 0 인구밀도 : 553명/km<sup>2</sup>
- 0 언 어 : 북경어 (공용어), 민남어, 객가어
- 0 기 후 : 아열대성 (북부지방), 열대성 (남부)
- 0 평균온도 : 겨울 15 °C, 여름 26 °C
- 0 년평균 강우량 : 256cm
- 0 1인당 GNP : 10, 566달러 (93년)
- 0 국민총생산액 : 2, 201억달러 (93년)
- 0 대외교역액 : 1, 620억달러 (93년)  
- 수출 : 849억달러, 수입 : 771억달러, 무역수지 : 98억달러
- 0 경제성장률 : 5. 9% (93년)

#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중국의 『통일백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국무원 신문판공실

## 목 차

前 文 .....	35
1.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一部 .....	36
2. 臺灣問題의 由來 .....	40
3. 中國政府의 臺灣問題 해결 基本方針 .....	44
4. 臺灣海峽 兩岸關係의 발전 및 장애 .....	48
5. 國際關係에서의 臺灣관계 문제 .....	51
結 論 .....	55



## 前 文

국가통일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이며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함. UN헌장에는 UN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독립을 침해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他國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UN은 『각국이 UN헌장에 의거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국가통일·영토보전·정치독립의 일부 혹은 완전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UN헌장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中國근대사는 침략·분할·능욕의 歷史인 동시에 中國인민이 민족독립 쟁취, 국가주권, 영토보전, 민족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해 온 歷史임. 臺灣문제 발생 및 진전과정은 모두가 이러한 歷史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몇가지 이유로 臺灣이 아직도 대륙과 분리상태에 있는 바, 이 상태는 하루이틀에 매듭지어질 것도 아니며 中華民族이 겪고 있는 상처 또한 하루이틀에 치유될 수도 없으며 中國인민의 국가통일과 영토보전을 위한 투쟁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님.

臺灣문제 실태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臺灣문제의 해결을 위한 中國정부의 입장과 주장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문제에 대해 記述할 필요가 있음.

## 1.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一部

臺灣은 中國대륙의 동남편에 놓여 있는 中國 제1의 큰 섬으로서 대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臺灣은 古代부터 中國에 歸屬

臺灣의 옛명칭은 『夷州』 또는 『流求』로 불려 왔으며 많은 史書와 문헌에는 中國인이 일찌기 臺灣을 개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 1700여 년전 3국시대 吳나라의 沈瑩이 지은 『臨海水土誌』 등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臺灣歷史에 관한 세계최초의 기록임. 서기 3세기와 7세기 3국시대의 孫吳정권과 隋나라 朝廷에서는 만여명을 臺灣에 파견시켰으며, 17세기이후에 들어서는 中國인의 臺灣에 대한 개척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17세기말에는 10만명이상의 대륙인이 臺灣에 파견되었으며 서기 1893년 (清朝 光緒19년) 臺灣의 總家口數는 50만 7,000여호, 人口는 254만명에 달했음. 즉 200년간 臺灣人口가 25배 증가했음. 그들은 선진 생산기술을 도입해 臺灣 전지역에 대한 개발속도를 크게 가속시켰음.

이러한 역사적 설명은 中國의 기타 省과 마찬가지로 臺灣도 中國 민족이 개척·定住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음. 臺灣의 사회발전은 시종 中華文化 전통을 이어 왔으며 비록 日帝 50년간의 침략시기에도 이러한 기본전통은 변하지 않았음. 臺灣개척의 歷史는 당시 원주민과 中國인의 피와 땀 및 지혜가 응집되어 있음.

中國의 歷代政府는 臺灣에 행정기구를 조직해 관할해 왔으며 12세기 중엽 宋나라는 군대를 澎湖에 파병, 주둔시켰으며 澎湖지역을 복건성 泉州 보강縣의 관할하에 두었음. 元나라 시대에는 澎湖에 『巡檢司』라는 행정관리기구를 두었고 明나라 시대에는 16세기중엽에 일시 폐지되었던 『巡檢司』제도를 부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澎湖에 군대를 증파했음.

1662년(淸 康熙元年)에 鄭成功이 臺灣에 『承天府』를 설치한 후 점차 행정기구를 확대 설치해 臺灣을 통치해 왔음. 1684년(康熙 23년)에 『分巡臺廈兵備道』 및 『臺灣府』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臺灣(현 臺南), 鳳山(현 高雄), 緒羅(현 嘉義)의 3개縣을 두고 이를 복건성 관할내에 두었음.

1714년 淸나라는 측량기술자를 파견하여 臺灣地圖를 만들어 섬의 크기를 계산했으며 1721년에는 『巡視臺灣監察御史』를 증설하였고 『彰化縣』과 『淡水府』를 증설했음. 1727년 淸나라 雍正五年에 『分巡臺廈道』를 『分巡臺灣道』(후일에 다시 『分巡臺灣兵備道』로 고침)로 고치고 『澎湖府』를 증설한 후 『臺灣』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음.

1875년 淸 정부는 臺灣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臺北府』 및 『淡水』, 『新竹』, 『宜蘭』 등 3개縣과 『基隆廳』을 두었음.

1885년 淸朝는 臺灣을 1개 省으로 승격, 劉銘傳을 초대 巡撫로 임명하고 행정구역을 3부 1주 11현 5정으로 확대했음. 劉銘傳은 임기중 철도부설, 광산개발, 전선 설치, 선박 건조, 학교건설 등으로 臺灣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을 크게 진전시켰음.

1945년 中國인민의 항일전쟁 승리후 中國정부는 臺灣省의 행정관리기구를 다시 회복시켰음.

### 海峽兩岸 中國人은 외국의 臺灣점령에 반대, 장기간 투쟁해 왔음

15세기말부터 서구 식민주의자가 식민지를 대거 약탈하였으며, 1624년 네덜란드가 臺灣 남부를 점령했고 1626년에는 스페인이 臺灣북부를 침략했으며 1642년에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북부를 점령하였음. 兩岸 동포는 외국의 臺灣점령에 반대, 장기간 무장봉기를 비롯 각종 방식의 투쟁을 전개했음.

1661년 鄭成功이 臺灣을 공략하여 이듬해 臺灣을 괴롭혀 온 네덜란드를 몰아냈음. 1894년 일본이 中國을 침략한 『甲午戰爭』이 발발하였고 다음 해 淸나라가 패배, 굴욕적인 시모노세끼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臺灣을 日本에 할양하자 전국이 분노했음.

北京에서 臺灣을 포함한 18개성 1,000여명의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臺灣 할양을 반대하는 上書를 발표하였고, 臺灣省内에서는 방성대곡으로 省 전체가 떠들썩했음. 臺灣에 주둔해 있던 淸나라 장군인 劉永福은 臺灣 동포와 함께 일본 주둔군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웠음.

中國대륙 동남부지역 주민들도 자금지원과 무장인원 파견 등을 통해 反日투쟁에 참여했음. 일본의 臺灣 강점기간에 臺灣동포는 용감히 항쟁하였는 바, 초기에는 의용군과 무장유격대를 조직해 7년간 日軍에 대항했음. 이어 辛亥革命으로 淸나라가 막을 내린후 大陸·臺灣 동포들이 전후 10차례 걸쳐 무장궤거를 했는 바, 1920-30년대에 걸쳐 臺灣의 반일항쟁운동은 극에 달했음.

1937년 中國인민이 전국적인 항일전쟁을 개시하였으며 中國정부는 對日 선전포고를 통해 中·日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협정·계약을 모두 파기한다고 선포했음. 이로써 시모노세끼조약은 폐지되었음. 이 포고문에는 또 中國은 장차 『臺灣, 澎湖, 東北 4省을 수복한다』고 엄숙히 선언했음. 中國인민은 8년동안의 항일전쟁을 통해 1945년 최후의 승리를 얻었고 잃었던 臺灣을 수복했음. 臺灣동포는 축포를 터트리고 축제행사와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臺灣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온 위대한 승리를 경축했음.

### 國際社會는 臺灣이 中國의 一部임을 公認

中國의 항일전쟁은 세계의 반파쇼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인민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태리 등 파시즘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中國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과 동맹을 결성했음. 1943년 12월 1일 중, 미, 영 3국이 『카이로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일본이 1914년 1차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점령한 모든 島嶼를 반환하고 中國에서 강점한 滿洲, 臺灣, 澎湖열도 등도 中國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45.7.26 미.영.중.소련이 참가한 『포츠담선언』에서 다시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음. '45.8.15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받아 들일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음. '45.10.25 동맹국은 臺灣省内 일본군의 降伏接收樣式을 臺北에서 거행하였음.

中國정부는 그날부터 臺灣 및 澎湖열도를 정식으로 中國영토로 편입시켰으며 토지.인민.政務를 모두 中國 주권하에 둔다고 선언했음. 이에 따라 臺灣.澎湖는 中國 주권의 관할하에 되돌아 왔음.

中華人民共和國 성립이래 157개 국가가 中國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中國은 하나이며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中國의 유일합법 정부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음.

## 2. 臺灣問題의 由來

臺灣은 2차대전후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미 中國에 복귀되었음. 臺灣문제의 발생은 中國 국민당이 일으킨 內戰과 관계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외세개입 문제임.

### 臺灣問題와 國共 內戰

항일전쟁기간중 中國공산당과 기타 애국역량의 지지하에 中國 국민당과 中國공산당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대항하였으며, 항일전쟁 승리후 兩黨은 계속 제휴하여 中華民族의 대업을 이루었어야 했으나 蔣介石을 수반으로 한 국민당 집단이 美國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국 인민의 평화염원과 독립·민주·부강한 『新中國』건설의 강렬한 희망을 저버리고 國·共양당이 체결한 『雙十協定』을 파기하고 전국 규모의 反人民的 內戰을 일으켰음. 국민당 집단이 이러한 반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국 인민이 南京의 中華民國政府를 마침내 전복시켰음.

1949. 10. 1 中華人民共和國이 中國의 유일합법정부로 성립되었으며 국민당 집단의 일부 軍.政 要人이 臺灣으로 패주하였음. 그들은 美國의 지지 밑에서 臺灣海峽兩岸의 분단상태를 조성했음.

### 臺灣問題와 美國政府의 責任

제2차대전후 당시 東西 양대진영 대치하에서 美國정부는 그들의 전세계 전략 및 自國 이익을 고려해 자금과 무력·인원을 동원, 국민당 집단의 內戰을 전력 지지함으로써 中國인민의 혁명사업을 방해했음. 그러나 美國은 끝내 그들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음.

美 국무성이 1949년 발표한 『美·中관계』백서와 『애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만』 대통령에 보내는 書信에서도 美國은 이를 인정하고 있음. 『애치슨』의 書信속에서는 『中國 내전의 결과가 美國의 통제능력에서 벗어난 점이 애석할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발생했는 바 이는 결코 우리들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中國내부의 각종 역량에서 비롯된 산물임. 우리는 벌써부터 이러한 역량을 통제할 계책을 마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記述하고 있음.

中華人民共和國 탄생이후 당시 美國은 당초 中國內戰의 와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新中國』에 대한 고립, 제재정책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韓國戰爭 발발후 中國 내정문제인 海峽兩岸關係에 대해 계속 간섭해 왔음. 1950. 6.27 美國 『트루만』 대통령은 미 7함대에 臺灣을 침략하는 어떠한 공격도 저지할 것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 7함대와 제13항공대가 臺灣에 진주하게 되었음. '54.12. 美國은 臺灣 당국과 소위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여 中國領인 臺灣省을 美國의 보호하에 두었음.

美國은 계속 中國내정에 간섭해 왔으며 臺灣해협에 장기간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어 왔으며 臺灣문제가 이때부터 中.美 양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臺灣해협지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中.美간 쟁점해결 모색과정은 中國이 50年代中期부터 美國과 대화를 개시하면서부터임. '55.8 - '70.2 中.美 양국은 136차에 걸쳐 大使級 회담을 개최했으나 臺灣해협 긴장완화면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음. 60-70대초 국제정세의 변화와 新中國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美國은 對中政策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양국관계가 해빙의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음.

1971년 10월, 제26차 UN총회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이 UN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臺灣 당국의 대표를 축출하는 제2758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1972년 2월 『닉슨』 美대통령이 訪中, 발표한 美.中 上海공동성명 내용에서 美國은 臺灣해협양안의 모든 중국인이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데 대해 美國정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1978.12 美國정부는 中國정부가 제시한 美國.臺灣 단교, 공동방위조약 폐기, 臺灣내 미군철수 등의 수교3원칙을 받아 들였음. 이로써, 美.中 양국은 '79.1.1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음.

美.中 수교 공동성명에서 『아메리카合衆國은 中華人民共和國이 中國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하며 美國인민은 臺灣과 문화.상업 및 기타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라는 中國의 입장을 인정함』으로써 美.中 관계정상화가 실현되었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美.中수교 3개월도 안되어 美國의회는 『臺灣관계법』을 통과시키고 美대통령이 이를 서명, 발효시켰음. 이 『臺灣관계법』은 美國 국내입법 형식으로서 美.中 수교성명 및 국제법 규정을 위반해 中國인민의 권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음. 美國정부는 이 관계법을 근거로 臺灣에 무기판매와 中國 내정간섭을 계속해 中國대륙과 臺灣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음.

美國의 對臺灣 무기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美.中 양국 정부는 '82년 협의를 통해 『8.17성명』을 발표했다. 美國정부는 이 성명에서 對臺灣 무기판매 정책을 중지하고 對臺灣 판매 무기성능 및 수량은 수교후 몇년간 제공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對臺灣 무기판매를 점차 축소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나, 공동성명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 위반행위를 계속 자행하였음.

아울러 美國정부는 1992년 9월 臺灣에 F-16 고성능전투기 15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美.中관계 발전과 臺灣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臺灣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美國정부에 책임이 있음. 70년대이래 美國 朝野의 대다수 인사들이 臺灣문제를 둘러싼 美.中간의 견해차를 좁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는데 上記 3개의 공동성명도 모두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 中國정부와 인민은 이를 크게 찬양하고 있으나, 美國은 中國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인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臺灣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음.



中國정부는 美國인민과 中國인민이 우호적이라고 믿고 있음. 양국관계의 정상적 발전은 양국 인민의 장기이익에 부합되며 공동염원이기도 함. 美.中 양국 공히 어렵게 얻어 낸 양국 관계발전의 3개 공동성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함. 만약 쌍방이 모두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인 상호존중과 大勢를 중시하는 원칙이 준수된다면 歷史的 未濟로 남아있는 臺灣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美.中 관계도 반드시 개선되고 발전될 것임.

### 3. 中國정부의 臺灣문제 해결 基本方針

臺灣문제 해결과 국가통일 실현은 전체 中國인민의 장엄하고도 신성한 사명임. 中華人民共和國 성립후 中國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는 바 中國정부의 臺灣문제 해결 기본방침은 『平和統一, 一國兩制』임.

#### 『平和統一, 一國兩制』방침의 형성

일찌기 50년대 中國정부는 이미 평화적 방법으로 臺灣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획해 왔음. '55년 5월 周恩來총리는 全人代 常務委 會議에서 中國인민은 臺灣문제를 전쟁과 평화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 中國인민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음. '56년 4월 毛澤東주석도 『평화는 고귀한 것이며 애국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선후 분별이 없다』는 정책을 주장했으나 일부 외세의 간섭 등 원인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실천되지 않고 있음.

70년대말부터 국제 및 국내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음. 美. 中간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中國공산당 11期 3中全會에서 당과 국가의 중점업무 방향을 현대화 경제건설에 두기로 결정했음. 이와 동시에 海峽兩岸의 中國人, 홍콩·마카오 동포, 해외화교 모두가 海峽兩岸이 손을 잡고 협력해 中華民族의 발전을 이루도록 苦待해 왔음.

이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中國정부는 전체 국가민족의 이익과 앞날을 고려, 역사와 현실 존중, 實事求是 및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平和統一, 一國兩制』방침을 제시했음.

1979.1.1 中華人民共和國 全人代 常務委가 발표한 『臺灣동포에 고함』이라는 문장에는 中國정부가 臺灣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침을 정중히 선포했으며 兩岸간에 군사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음. 中國은 국가통일 과정에서 臺灣의 현실과 臺灣 각계인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표시했음.

1981. 9.30 全人代 常務委 위원장 葉劍英은 진일보된 臺灣문제 해결방침을 천명했는데, 국가통일 실현후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高度의 自治權을 향유할 수 있다고 표시했고 兩岸 執權黨인 國·共 兩黨이 대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벌일 것을 제의했음.

1982.1.11 中國의 지도자 鄧小平은 葉劍英이 제시한 안을 『1個國家, 2個制度』로 규정하고 국가통일 실현의 大前提하에서 中國은 사회주의 제도를 실천하고 臺灣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천하자는 談話를 발표하였음.

'83.6.26 鄧小平은 臺灣. 大陸간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구상을 발표, 中國통일과 臺灣特別行政區 설치문제에 대한 中國政府의 기본입장을 천명하였음.

'92.10.12 江澤民 총서기는 『우리는 平和統一, 一國兩制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우리는 中國 공산당이 국민당과 하루빨리 접촉을 갖고 조건을 성숙시켜 兩岸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점차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담판을 실시할 것을 재차 제의하였으며 협상시 兩岸의 기타 정당, 단체, 각계대표 인사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 『平和統一, 一國兩制』의 基本點

『平和統一, 一國兩制』는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건설이론과 실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中國정부의 불변의 기본국책임. 이러한 방침에는 다음의 基本點을 갖고 있음.

#### (1) 하나의 中國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정부는 北京에 있음. 이것은 온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臺灣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前提임.

中國정부는 中國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2個中國』, 『1中1臺』 혹은 『1國兩府』를 반대하고 『臺灣독립』을 초래하는 일체 행동에도 반대함. 海峽兩岸 中國인민이 모두 『하나의 中國』만을 주장하며 국가의 통일을 옹호하고 있고 臺灣이 中國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사실이 확정적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위 『自決』문제는 존재할 수 없음.

## (2) 兩制共存

하나의 中國前提下에 대륙 사회주의제도와 臺灣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하며 누가 누구를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님. 이러한 발상이 나온 것은 臺灣의 현실과 臺灣 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한데 기초하고 있음. 이는 앞으로 통일후 中國의 국가체제가 갖는 중요한 특징임.

兩岸통일이 실현된 후 臺灣의 현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방식은 불변이며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불변임. 예를 들면 개인재산, 주택, 토지, 기업 소유권, 합법 상속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등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음.

## (3) 高度自治

통일후 臺灣은 『特別行政區』가 되며 中國의 기타 省·區와 달리 高度의 自治權을 향유함. 『特別行政區』는 臺灣의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 사법권 및 終審權, 당·정·군·경·재정방면 업무의 자주관리 및 자위군대 유지 등 권한을 보유하고 대륙은 군대와 행정요원을 臺灣에 파견해 주둔할 수 없음. 『特別行政區』정부는 臺灣 각계 대표인사에게 어떠한 국가기구의 職責도 맡는 것을 허용하고 전국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4) 平和談判

접촉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전체 中國人의 희망임. 만일 中國의 주권 및 영토가 외세에 의해 분리되어 상호투쟁, 骨肉相爭으로 대처하면 兩岸 동포는 극히 불행한 것임. 전민족 대단결, 臺灣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 全 中國의 부강을 위해 평화통일이 절실히 요망됨.

敵對狀態 해소와 平和統一 실현을 위해 兩岸은 조속한 시일내에 접촉 담판을 해야 함. 하나의 中國 前提下에 담판방식을 포함, 참가당파, 단체 및 각계 대표인사 및 臺灣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타 모든 問題 등 어떠한 問題도 담판할 수 있음. 兩岸이 대좌하여 담판하면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兩岸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中國정부는 통일이전에 쌍방이 상호존중, 상호보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兩岸 경제협력 등 각 방면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직접 通郵, 通商, 通航을 실시하고 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장함.

平和統一은 中國정부의 기존방침이나, 모든 주권국가는 軍事手段을 포함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으로 自國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 中國정부는 自國 内部問題를 처리하는데 어느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나라 또는 中國분열을 기도하는 자의 승락을 받을 의무가 없음.

臺灣問題는 中國 内政問題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협의를 거쳐 형성된 獨逸問題와 韓國問題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臺灣問題는 獨逸과 韓國問題와 같은 맥락으로 논의할 수 없는 것임. 中國정부는 獨逸問題와 韓國問題 처리방식을 원용해 臺灣問題를 처리하는데 대해 계속 반대해 왔음. 臺灣問題는 마땅히 兩岸간의 협상을 거쳐 『하나의 中國』테두리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구해야만 함.

#### 4. 臺灣 海峽兩岸관계의 發展 및 障礙

臺灣 海峽兩岸의 분리상태는 中華民族의 불행임. 모든 中國人은 이러한 비통한 국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兩岸 인민의 정상적 왕래와 국가통일을 위해 中國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동시에 兩岸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음.

정책조정을 통해 兩岸간의 정치적 적대감정을 해소했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전 臺灣人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군사분야에서는 능동적으로 兩岸의 군사대치상태를 완화하고 金門島 등 島嶼에 대한 포격을 중지함과 아울러 福建地域 해안의 진지·관측소를 경제개발구와 관광위락지구로 전환하였음.

경제분야에서는 개방과 교류 촉진으로 臺灣 상인의 對大陸 투자 및 무역활동을 환영하며 우대조건 제공과 함께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였음.

기타 인적교류·우편통신·과학기술·문화·체육·학술·뉴스교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中國정부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兩岸간 제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였음.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인 『海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臺灣의 『海峽交流基金會』와 접촉을 통해 兩岸 인민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兩岸관계 발전을 도모하였음.

中國정부의 對臺灣 정책 및 조치는 점점 더 臺灣동포, 홍콩·마카오동포, 해외동포 및 中國人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많은 臺灣동포들이 兩岸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臺灣 당국은 최근 수년간 이에 상응한 對大陸 정책을 조정하고 유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臺灣 민중의 大陸探親 허용과 兩岸교류 제한 완화, 간접무역 확대, 간접투자허용, 兩岸동포간 通話, 通郵, 送金手續 간소화 등임.

이러한 조치는 상호왕래에 유리한 것으로, 이와 관련 최근 兩岸의 경제 무역이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인적교류 및 각종교류활동이 꾸준히 확대되었음. 1993년 4월 실시된 『汪辜會談』에서 中國과 臺灣 양측대표가 4개항의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兩岸관계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一步를 내딛었음. 臺灣海峽은 40여년간 볼 수 없었던 화해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임.

필히 지적할 것은 臺灣당국이 兩岸관계에 다소 유연해졌으나 현행 대륙 정책은 아직도 兩岸관계 발전 및 국가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그들은 입으로는 中國의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中國』원칙을 위반하고, 平和統一問題를 협상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 兩岸 교류의 진일보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최근 들어 臺灣내 『臺灣獨立』주장이 나날이 확대되어 兩岸관계 발전 및 국가 平和統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 『臺灣獨立』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역사적 근원 및 국제적 요인이 있으며 臺灣당국은 담판거절과 왕래를 제한하고 국제적으로 『二重承認』 및 『2個中國』 정책을 추진하는 등 『臺灣獨立』활동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臺灣동포가 요구하는 臺灣의 주체적 관리 희망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이나 이는 『臺灣獨立』과는 다른 것임. 극소수 인사들이 주장하는 『臺灣獨立』요구는 臺灣주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볼 수 없음. 극소수 『臺灣獨立』분자는 臺灣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외국에 의존해 臺灣을 中國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망상을 갖고 있음. 이는 臺灣동포를 포함한 전체 中國인의 근본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임.

中國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臺灣 독립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

일부 외부세력은 中國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中國內政에 백방으로 간섭하고 있고 臺灣당국의 『反共·平和交渉 拒否』정책과 臺灣내 분열세력을 지지해 中國 平和統一에 장애를 초래, 中國인민의 민족감정에 엄중한 상처를 입혔음.

中國정부는 대부분의 臺灣동포가 국가통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대다수 臺灣의 朝野 정치역량 역시 국가통일을 주장하고 있음. 兩岸 인민의 공동노력하에 以上에서 밝힌 장애와 저항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兩岸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5. 國際關係에서의 臺灣關係 問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에는 하나의 中國만이 있으며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一部分임. 中華人民共和國정부는 전 中國인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서 UN 및 세계 각국의 보편적 승인을 얻었음.

국가주권 유지와 국가통일 실현을 위해 中國정부는 국제업무중 臺灣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시종일관 『1個中國』原則을 지켜왔으며 臺灣동포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해 왔음. 中國정부는 이러한 中國의 입장이 각국 정부와 인민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여기에서 中國정부는 아래의 몇가지 입장과 정책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1) 中國 修交國과 臺灣간 關係問題

현재 세계에 中國과 수교한 나라는 모두 국제법과 『1個中國』원칙을 준수하며 中國정부와 臺灣문제를 정식 협의와 양해를 통해 해결하고 臺灣과는 정부간의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을 수락했음.

국제법에 의하면 一個 주권국가에는 하나의 중앙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中國의 일부분인 臺灣이 국제적으로 中國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외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공식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

그러나 臺灣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臺灣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해 臺灣 외국간의 민간경제, 문화왕래에 대해서는 中國정부가 이의를 갖지 않음.

최근 몇년간 臺灣당국이 국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實務外交』는 中國과 수교한 일부 국가와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二重承認』을 추진하여 『2個中國』, 『1中1臺』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해 中國정부는 단호히 반대함.

세계의 절대다수 국가가 中國과의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겨 臺灣문제와 관련 中國과 합의한 협의 및 양해를 각별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中國정부는 이에 대해 찬사를 보냄.

그러나 어떤 국가는 국제적 신망을 저버리고 中華人民共和國와 修交時 맺었던 약속을 위반, 臺灣과 공식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中國통일사업에 장애를 낳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中國정부는 有關 국가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함.

## (2) 國際組織과 臺灣간 關係問題

각 국가의 주권은 완전한 것으로 분할할 수도 없으며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것임. 中華人民共和國정부는 中國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국제조직에서 국가주권 행사와 전체 中國을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음. 臺灣당국이 일부 주권국가들만이 참가하는 국제조직에서 소위 『1國兩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2個中國』을 조성하는 것인 바, 中國정부는 이와 같은 작태를 단호히 반대함.

이러한 원칙과 입장은 臺灣동포 및 해외교포를 포함한 전체 中國人의 근본이익과 완전 부합되는 것임.

하나의 中國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만 中國정부는 有關 국제조직의 성질·규정·규약 및 실제정황에 근거해 中國정부가 동의·접수한 방식으로서 일부 국제조직 활동에 臺灣이 참가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음.

UN산하의 모든 기구는 주권국가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조직임. 中華人民共和國이 UN에서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 후에 UN산하 모든 기구도 中華人民共和國이 향유하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臺灣당국의 代表權을 박탈기로 하는 정식 결의를 통과시켰음. 이로써 UN조직에서 中國 代表權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근본적으로 臺灣의 再加入 문제가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들어 臺灣당국의 일부 인사가 다시 UN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임. 분명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주권분열을 기도하는 일종의 망상적 행동으로 법리상이나 실제상으로나 모두 통하지 않는 것임. 中國정부는 각국 정부와 UN산하조직이 이러한 기도를 간파해 中國의 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기타 정부간 국제조직에는 원칙적으로 臺灣이 참가할 권리가 없음. 臺灣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 지역경제조직 가입은 中國정부가 각 유관분야와 협의·양해하에 가능하였으며, 中華人民共和國이 주권국가로 참가하고 臺灣은 단지 中國의 일개지구로서 『中國臺北』(영문: TAIPEI, CHINA;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는 CHINESE TAIPEI)의 명칭으로 참가활동을 한다는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임.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기타 정부간에 구성된 국제조직 및 국제활동에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 없음.

中國의 전국적 조직이 中國의 명의로 참가한 민간성격의 國際組織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상응하는 조직이 유관부서와 협의·양해를 얻었을 경우 臺灣의 상응하는 조직은 『中國臺北』(TAIPEI, CHINA) 혹은 『中國臺灣』(TAIWAN, CHINA)의 명칭으로 참가할 수 있음.

### (3) 中國 수교국과 臺灣간 通航問題

한 국가의 영공은 그 나라 영토의 주요 구성부분임. 1919년 공포한 『파리항공협정』과 1944년 서명한 『시카고협정』에서 모든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원칙이 있다고 밝혔음.

이로서 中國 수교국가의 모든 항공공사는 비록 개인항공사일지라도 臺灣과 通航하는 것은 모두 中國주권에 관계되는 政治問題이며 일반적 민간 관계가 아님. 中國 수교국가의 국영항공사는 당연히 臺灣과 通航이 불가하며 필히 中國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함.

中國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항공공사는 臺灣의 민간항공공사와 상호 운항할 수 있음. 실제로 上記 원칙에 근거 中國정부는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민간항공공사와 臺灣의 민간항공사간의 通航을 동의했음.

中華人民共和國과 수교전에 臺灣에 통항한 일부 국가는 中國정부와 협의를 거쳐 臺灣과 정부성격의 통항을 민간 상업차원으로 계속 운항할 수 있음.

#### (4) 中國 수교국의 對臺灣 武器販賣 問題

中國정부는 어떤 국가든지 臺灣에 대해 어떤 종류의 무기·장비를 판매하거나 무기 생산기술을 제공하는데 단호히 반대함.

中國과 수교한 국가는 주권존중, 영토보전,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형식이나 핑계로도 臺灣에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됨. 그렇지 않으면 국제관계준칙 위반이 되며 中國 내정에 간섭하는 것임. 세계 각국 특히 세계평화사업에 중책을 맡고 있는 大國은 UN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재래식 무기판매 확산 제한 원칙을 지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공헌해야 함.

그러나 臺灣海峽 兩岸관계가 날로 완화되는 추세하에서 일부 국가는 스스로 국제협약을 위배해 中國정부를 고려치 않고 臺灣에 무기를 판매, 海峽兩岸간에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음. 이는 中國안정에 엄중한 위협일뿐 아니라 中國 통일사업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한 것임. 中國인민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함.

국제업무중에서 中國정부는 일관되게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추구하며 상호 주권존중 및 영토보전,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등 5개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과 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다른 나라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음. 똑같이 中國정부도 각국 정부가 中國의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中國 内政에 간섭하지 않으며 臺灣관계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

## 結 論

中國통일은 中華民族의 근본 희망임. 中國통일이 실현된 후 兩岸은 합작, 상호 보조, 경제발전, 中華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줄곧 곤란을 겪고 있는 臺灣의 각종 문제는 모두 하나의 中國 테두리내에서 합리적 해결을 얻을 수 있음.

臺灣동포는 장차 조국의 기타 지역 인민과 함께 하나의 위대한 국가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향유함. 장기간동안 臺灣문제는 계속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안정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음.

中國의 통일은 中國 자신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익할뿐 아니라 中國과 각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진일보 증진에도 유익하며 亞·太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임.

中國정부는 스스로의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사업에서 반드시 세계각국 정부와 인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 台湾问题与中国的统一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  
国务院新闻办公室

# 目 录

前 言 .....	61
一、台湾是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 .....	63
二、台湾问题的由来 .....	68
三、中国政府解决台湾问题的基本方针 .....	73
四、台湾海峡两岸关系的发展及其阻力 .....	79
五、国际事务中涉及台湾的几个问题 .....	83
结束语 .....	89

# 前 言

维护国家统一和领土完整,是每个主权国家的神圣权利,也是国际法的基本原则。联合国宪章明确规定:联合国和它的成员国不得侵害任何会员国或国家之领土完整或政治独立,不得干涉在本质上属于任何国家国内管辖的事件。联合国《关于各国依联合国宪章建立友好关系及合作之国际法原则之宣言》指出:凡以局部或全部破坏国家统一及领土完整或政治独立为目的之企图,都是不符合联合国宪章精神的。

中国近代史是一部被侵略、被宰割、被凌辱的历史,也是中国人民为争取民族独立,维护国家主权、领土完整和民族尊严而英勇奋斗的历史。台湾问题的产生与发展,都与这段历史有着紧密的联系。由于种种原因,台湾迄今尚处于与大陆分离的状态。这种状态一天不结束,中华民族所蒙受的创伤就一天不能愈合,中国人民为维护国家统一



和领土完整的斗争也一天不会结束。

台湾问题的现状如何？症结何在？中国政府解决台湾问题的立场与主张是什么？为了便于国际社会有一个清楚的了解，有必要就下列问题加以阐述。

## 一、台湾是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

台湾地处中国大陆的东南缘,是中国第一大岛,同大陆是不可分割的整体。

**台湾自古即属于中国。**台湾古称夷洲、流求。大量的史书和文献记载了中国人民早期开发台湾的情景。距今1700多年以前,三国时吴人沈莹的《临海水土志》等对此就有所著述,它们是世界上记述台湾最早的文字。公元3世纪和7世纪,三国孙吴政权和隋朝政府都曾先后派万余人去台。进入17世纪之后,中国人民在台湾的开拓规模越来越大。17世纪末,大陆赴台开拓者超过10万人。至公元1893年(清光绪十九年)时,总数达到50.7万余户,254万余人。200年间增长25倍。他们带去先进的生产方式,由南到北,由西及东,筚路蓝缕,披荆斩棘,大大加速了台湾整体开发的进程。这一史实说明,台湾和中国其他省区一样,同为中国各族人民所开拓所定居。台湾社会的发展始终延续着中华文化的传统,即使在日本侵占的50年间,这

一基本情况也没有改变。台湾的开拓发展史，凝聚了包括当地少数民族在内的中国人民的血汗和智慧。

中国历代政府在台湾先后建立了行政机构，行使管辖权。早在公元12世纪中叶，宋朝政府即已派兵驻守澎湖，将澎湖地区划归福建泉州晋江县管辖。元朝政府在澎湖设置行政管理机构“巡检司”。明朝政府于16世纪中后期，恢复了一度废止的“巡检司”，并为防御外敌侵犯，增兵澎湖。1662年（清康熙元年），郑成功在台湾设“承天府”。清朝政府逐步在台湾扩增行政机构，加强了对台湾的治理。1684年（清康熙二十三年）设“分巡台厦兵备道”及“台湾府”，下设“台湾”（今台南）、“凤山”（今高雄）、“诸罗”（今嘉义）3县，隶属福建省管辖。1714年（清康熙五十三年），清政府派员测绘台湾地图，勘丈全境里数。1721年（清康熙六十年），增设“巡视台湾监察御史”，改“分巡台厦兵备道”为“分巡台厦道”。尔后又增设“彰化县”和“淡水厅”。1727年（清雍正五年），复改“分巡台厦道”为“分巡台湾道”（后又改为“分巡台湾兵备道”），增“澎湖厅”，定“台湾”为官方统一的名称。1875年（清光绪元年），清政府为进一步经营和治理台湾，再增设“台北府”及“淡水”、“新竹”、“宜兰”3县和“基隆厅”。1885年（清光绪十一年），清政府正式划台湾

为单一行省，任刘铭传为首任巡抚，行政区扩为 3 府 1 州，领 11 县 5 厅。刘在任内，铺铁路，开矿山，架电线，造商轮，兴办企业，创设新学堂，把台湾社会经济文化的发展大大向前推进。

1945 年中国人民抗日战争胜利后，中国政府重新恢复了台湾省的行政管理机构。

**海峡两岸中国人为反对外国侵占台湾进行了长期不懈的斗争。**15 世纪后期起，西方殖民主义者大肆掠夺殖民地。1624 年（明天启四年），荷兰殖民者侵占台湾南部。1626 年（明天启六年），西班牙殖民者入侵台湾北部。1642 年（明崇祯十五年），荷兰又取代西班牙占领台湾北部。两岸同胞为反对外国殖民者侵占台湾进行了包括武装起义在内的各种方式的斗争。1661 年（清顺治十八年），郑成功率众进军台湾，于次年驱逐了盘踞台湾的荷兰殖民者。

1894 年（清光绪二十年），日本发动侵略中国的“甲午战争”。翌年，清政府战败，在日本威迫下签订丧权辱国的《马关条约》，割让台湾。消息传来，举国同愤。在北京会试的包括台湾在内的 18 省千余举人“公车上书”，反对割台。台湾全省“哭声震天”，鸣锣罢市。协理台湾军务的清军将领刘永福等和台湾同胞一起，与占领台湾的日军拼死搏

斗。中国大陆东南各地居民为支援这一斗争，或捐输饷银，或结队赴台，反抗日本侵略。在日本侵占台湾期间，台湾同胞一直坚持英勇不屈的斗争。初期，他们组织义军，进行武装游击抵抗，前后达7年之久。继而，在辛亥革命推翻清政府后，他们又汇同大陆同胞一道，先后发起十余次武装起义。及至本世纪20和30年代，岛内反抗日本殖民统治的群众运动更加波澜壮阔，席卷台湾南北。

1937年，中国人民开始了全民族的抗日战争。中国政府在《中国对日宣战布告》中明确昭告中外：所有一切条约、协定、合同有涉及中日关系者，一律废止。《马关条约》自属废止之列。这一布告并郑重宣布：中国将“收复台湾、澎湖、东北四省土地”。中国人民经过8年艰苦的抗日战争，于1945年取得了最后的胜利，收复了失土台湾。台湾同胞鸣放鞭炮，欢欣鼓舞，祭告祖先，庆祝回归祖国怀抱的伟大胜利。

**国际社会公认台湾属于中国。**中国人民的抗日战争是世界反法西斯斗争的一部分，得到了世界人民的广泛支持。在第二次世界大战中，为了反对德、日、意法西斯轴心国，中国与美国、苏联、英国、法国等结成同盟国。1943年12月1日，中、美、英三国签署的《开罗宣言》指出：“三国

之宗旨，在剥夺日本自 1914 年第一次世界大战开始以后在太平洋所夺得或占领之一切岛屿，在使日本所窃取于中国之土地，例如满洲、台湾、澎湖列岛等，归还中国。”1945 年 7 月 26 日，中、美、英三国签署（后苏联参加）的《波茨坦公告》又重申：“开罗宣言之条件必将实施”。同年 8 月 15 日，日本宣布投降，《日本投降条款》规定：“兹接受中美英三国共同签署的、后来又有苏联参加的 1945 年 7 月 26 日的波茨坦公告中的条款”。10 月 25 日，同盟国中国战区台湾省受降仪式于台北举行，受降主官代表中国政府宣告：自即日起，台湾及澎湖列岛已正式重入中国版图，所有一切土地、人民、政事皆已置于中国主权之下。至此，台湾、澎湖重归于中国主权管辖之下。

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157 个国家先后同中国建立了外交关系，它们都承认只有一个中国，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中国的唯一合法政府，台湾是中国的一部分。

## 二、台湾问题的由来

台湾在第二次世界大战之后，不仅在法律上而且在事实上已归还中国。之所以又出现台湾问题，与随后中国国民党发动的反人民内战有关，但更重要的是外国势力的介入。

**台湾问题与国民党发动的内战。**中国抗日战争期间，在中国共产党和其他爱国力量的推动下，中国国民党与中国共产党建立了抗日民族统一战线，抗击日本帝国主义的侵略。抗日战争胜利后，两党本应继续携手，共肩振兴中华大业，惟当时以蒋介石为首的国民党集团依仗美国的支持，置全国人民渴望和平与建设独立、民主、富强的新中国的强烈愿望于不顾，撕毁国共两党签订的《双十协定》，发动了全国规模的反人民内战。中国人民在中国共产党领导下被迫进行了三年多的人民解放战争，由于当时的国民党集团倒行逆施，已为全国各族人民所唾弃，中国人民终于推翻了南京的“中华民国”政府。1949年10月1日成立了

中华人民共和国，中华人民共和国政府成为中国的唯一合法政府。国民党集团的一部分军政人员退据台湾。他们在当时美国政府的支持下，造成了台湾海峡两岸隔绝的状态。

**台湾问题与美国政府的责任。**第二次世界大战后，在当时东西方两大阵营对峙的态势下，美国政府基于它的所谓全球战略及维护本国利益的考虑，曾经不遗余力地出钱、出枪、出人，支持国民党集团打内战，阻挠中国人民革命的事业。然而，美国政府最终并未达到它自己所希望达到的目的。美国国务院 1949 年发表的《美国与中国的关系》白皮书和艾奇逊国务卿给杜鲁门总统的信，都不得不承认这一点。艾奇逊在他的信中说：“中国内战不祥的结局超出美国政府控制的能力，这是不幸的事，却也是无可避免的”；“这种结局之所以终于发生，也并不是因为我们少做了某些事情。这是中国内部各种力量的产物，我国曾经设法去左右这些力量，但是没有效果”。

中华人民共和国诞生以后，当时的美国政府本来可以从中国内战的泥潭中拔出来，但是它没有这样做，而是对新中国采取了孤立、遏制的政策，并且在朝鲜战争爆发后武装干涉纯属中国内政的海峡两岸关系。1950 年 6 月 27



日，美国总统杜鲁门发表声明宣布：“我已命令第七舰队阻止对台湾的任何攻击”。美国第七舰队侵入了台湾海峡，美国第十三航空队进驻了台湾。1954年12月，美国又与台湾当局签订了所谓《共同防御条约》，将中国的台湾省置于美国的“保护”之下。美国政府继续干预中国内政的错误政策，造成了台湾海峡地区长期的紧张对峙局势，台湾问题自此亦成为中美两国间的重大争端。

为了缓和台湾海峡地区的紧张局势，探寻解决中美两国之间争端的途径，中国政府自50年代中期起，即开始与美国对话。1955年8月至1970年2月，中美两国共举行了136次大使级会谈，但在缓和与消除台湾海峡地区紧张局势这个关键问题上，未取得任何进展。及至60年代末70年代初，随着国际局势的发展变化和新中国的壮大，美国开始调整其对华政策，两国关系逐步出现解冻的形势。1971年10月，第26届联合国大会通过2758号决议，恢复中华人民共和国在联合国的一切合法权利，并驱逐台湾当局的“代表”。1972年2月，美国总统尼克松访问中国，中美双方在上海发表了联合公报。公报称：“美国方面声明：美国认识到，在台湾海峡两边的所有中国人都认为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美国政府对这一立场不提

近几年供应的水平，它准备逐步减少它对台湾的武器出售，并经过一段时间导致最后的解决。”然而，十多年来美国政府不但没有认真执行公报的规定，而且不断发生违反公报的行为。1992年9月，美国政府甚至决定向台湾出售150架F—16型高性能战斗机。美国政府的这一行动，给中美关系的发展和台湾问题的解决增加了新的障碍和阻力。

由上可见，台湾问题直到现在还未得到解决，美国政府是有责任的。自70年代以来，美国朝野许多有识之士和友好人士，曾经为促使中美之间在台湾问题上的分歧的解决做了大量有益的工作，上述三个联合公报就包含着他们的努力和贡献。中国政府和人民对此十分赞赏。然而也不能不看到，美国确也有人至今仍不愿看到中国的统一，制造种种借口，施加种种影响，阻挠台湾问题的解决。

中国政府相信，美国人民与中国人民是友好的。两国关系的正常发展，是符合两国人民的长远利益和共同愿望的。中美两国都应珍视来之不易的指导两国关系发展的三个联合公报。只要双方都能恪守三个公报的原则，相互尊重，以大局为重，历史遗留下来的台湾问题就不难得到解决，中美关系就一定能不断获得改善和发展。

### 三、中国政府解决台湾问题的基本方针

解决台湾问题，实现国家统一，是全体中国人民一项庄严而神圣的使命。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中国政府为之进行了长期不懈的努力。中国政府解决台湾问题的基本方针是“和平统一、一国两制”。

**“和平统一、一国两制”方针的形成。**早在 50 年代，中国政府就曾设想以和平方式解决台湾问题。1955 年 5 月，周恩来总理在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会议上即提出：中国人民解决台湾问题有两种可能的方式，即战争的方式和和平的方式，中国人民愿意在可能的条件下，争取用和平的方式解决问题。1956 年 4 月，毛泽东主席又提出：“和为贵”、“爱国一家”、“爱国不分先后”等政策主张。但由于某些外国势力的干预等原因，这些主张未能付诸实践。

自 70 年代末开始，国际国内形势发生了一些重要变化：中美建立外交关系，实现了关系正常化；中国共产党召

开十一届三中全会，决定把党和国家的工作中心转移到现代化经济建设上来。与此同时，海峡两岸的中国人、港澳同胞以及海外侨胞、华人，都殷切期望两岸携手合作，共同振兴中华。在这样的历史条件下，中国政府出于对整个国家民族利益与前途的考虑，本着尊重历史、尊重现实、实事求是、照顾各方利益的原则，提出了“和平统一、一国两制”的方针。

1979年1月1日，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发表《告台湾同胞书》，郑重宣告了中国政府和平解决台湾问题的大政方针，呼吁两岸就结束军事对峙状态进行商谈。表示在实现国家统一时，一定“尊重台湾现状和台湾各界人士的意见，采取合情合理的政策和办法”。

1981年9月30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叶剑英发表谈话，进一步阐明解决台湾问题的方针政策。表示“国家实现统一后，台湾可作为特别行政区，享有高度的自治权”，并建议由两岸执政的国共两党举行对等谈判。

1982年1月11日，中国领导人邓小平就叶剑英的上述谈话指出：这实际上就是“一个国家、两种制度”，在国家实现统一的大前提下，国家主体实行社会主义制度，台湾

实行资本主义制度。

1983年6月26日,邓小平进一步发挥了关于实现台湾与大陆和平统一的构想,指出,问题的核心是祖国统一。他还就两岸统一和设置台湾特别行政区问题,阐明了中国政府的政策。

1992年10月12日,中共中央总书记江泽民指出:“我们坚定不移地按照‘和平统一、一国两制’的方针,积极促进祖国统一。”“我们再次重申,中国共产党愿意同中国国民党尽早接触,以便创造条件,就正式结束两岸敌对状态、逐步实现和平统一进行谈判。在商谈中,可以吸收两岸其他政党、团体和各界有代表性的人士参加。”

**“和平统一、一国两制”的基本点。**“和平统一、一国两制”是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理论和实践的重要组成部分,是中国政府一项长期不变的基本国策。这一方针,有以下基本点:

(一)**一个中国**。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中央政府在北京。这是举世公认的事实,也是和平解决台湾问题的前提。

中国政府坚决反对任何旨在分裂中国主权和领土完整的言行,反对“两个中国”、“一中一台”或“一国两府”,反

对一切可能导致“台湾独立”的企图和行径。海峡两岸的中国人民都主张只有一个中国，都拥护国家的统一，台湾作为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的地位是确定的、不能改变的，不存在什么“自决”的问题。

**(二)两制并存。**在一个中国的前提下，大陆的社会主义制度和台湾的资本主义制度，实行长期共存，共同发展，谁也不吃掉谁。这种考虑，主要是基于照顾台湾的现状和台湾同胞的实际利益。这将是统一后的中国国家体制的一大特色和重要创造。

两岸实现统一后，台湾的现行社会经济制度不变，生活方式不变，同外国的经济文化关系不变。诸如私人财产、房屋、土地、企业所有权、合法继承权、华侨和外国人投资等，一律受法律保护。

**(三)高度自治。**统一后，台湾将成为特别行政区。它不同于中国其他一般省区，享有高度的自治权。它拥有在台湾的行政管理权、立法权、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党、政、军、经、财等事宜都自行管理；可以同外国签订商务、文化等协定，享有一定的外事权；有自己的军队，大陆不派军队也不派行政人员驻台。特别行政区政府和台湾各界的代表人士还可以出任国家政权机构的领导职务，参与全国事务

的管理。

**(四)和平谈判。**通过接触谈判,以和平方式实现国家统一,是全体中国人的共同心愿。两岸都是中国人,如果因为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被分裂,兵戎相见,骨肉相残,对两岸的同胞都是极其不幸的。和平统一,有利于全民族的大团结,有利于台湾社会经济的稳定和发展,有利于全中国的振兴和富强。

为结束敌对状态,实现和平统一,两岸应尽早接触谈判。在一个中国的前提下,什么问题都可以谈,包括谈判的方式,参加的党派、团体和各界代表人士,以及台湾方面关心的其他一切问题。只要两岸坐下来谈,总能找到双方都可以接受的办法。

鉴于两岸的现实状况,中国政府主张在实现统一之前,双方按照相互尊重、互补互利的原则,积极推动两岸经济合作和各项交往,进行直接通邮、通商、通航和双向交流,为国家和平统一创造条件。

和平统一是中国政府既定的方针。然而,每一个主权国家都有权采取自己认为必要的一切手段包括军事手段,来维护本国主权和领土的完整。中国政府在采取何种方式处理本国内部事务的问题上,并无义务对任何外国或图谋

分裂中国者作出承诺。

这里还应指出，台湾问题纯属中国的内政，不同于第二次世界大战后经国际协议而形成的德国问题和朝鲜问题。因此，台湾问题不能和德国、朝鲜问题相提并论。中国政府历来反对用处理德国问题、朝鲜问题的方式来处理台湾问题。台湾问题应该也完全可以通过两岸的协商，在一个中国的架构内求得合理的解决。



## 四、台湾海峡两岸关系的发展及其阻力

台湾海峡两岸目前的分离状态，是中华民族的不幸。所有中国人无不殷切盼望早日结束这种令人痛心的局面。

为了实现两岸人民正常往来和国家统一，中国政府在提出和平统一主张的同时，也采取了一系列推动两岸关系发展的措施：

政治方面，调整有关政策措施，化解敌对情绪。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决定不再追诉去台人员在中华人民共和国成立前的犯罪行为。

军事方面，主动缓和海峡两岸军事对峙状态，停止对金门等岛屿的炮击，并把福建沿海一些前沿阵地、观察所开辟为经济开发区和旅游点。

经济方面，敞开门户，促进交流，欢迎台商来大陆投资和从事贸易活动，并为之提供优惠条件和法律保障。

其他如人员往来、邮电交通以及科技、文化、体育、学术、新闻等方面，中国政府亦持积极态度，采取了相应措

施,鼓励发展两岸在各个领域的交流与合作。还成立了得到政府授权的民间团体“海峡两岸关系协会”,同台湾“海峡交流基金会”及有关民间团体建立联系,维护两岸人民的合法权益,推动两岸关系的发展。

中国政府的对台政策和措施,得到了越来越多的台湾同胞、港澳同胞和海外侨胞、华人的理解和支持。广大台湾同胞为发展两岸关系作出了很大的努力。台湾当局近几年也相应调整了对大陆的政策,采取了一些松动措施,诸如开放岛内民众赴大陆探亲,逐步放宽对两岸民间交流交往的限制,扩大间接贸易,开放间接投资,简化两岸同胞通话、通邮、通汇的手续。这些都是有利于相互交往的。近年来,两岸的经济贸易迅速发展,人员往来及各项交流活动不断扩大。1993年4月举行的“汪辜会谈”签订了四项协议,迈出了两岸关系上具有历史意义的重要一步。台湾海峡出现了40余年来前所未有的缓和气氛,这是有利于和平统一的。

必须指出,台湾当局虽对两岸关系作了某些松动,但其现行大陆政策仍严重阻碍着两岸关系的发展和国家的统一。他们口头上虽声称“中国必须统一”,但行动上却总是背离一个中国的原则,继续维持与大陆分离的局面,拒

绝就和平统一问题进行商谈，甚至设置障碍，限制两岸交往的进一步发展。

近年来，台湾岛内“台独”活动日形嚣张，给两岸关系的发展和国家和平统一投下了阴影。“台独”的产生有着复杂的社会历史根源和国际背景，而台湾当局拒绝和谈、限制交往、在国际上推行“双重承认”和“两个中国”的政策，又实际上为“台独”活动提供了条件。应当说，台湾同胞要求当家作主管理台湾的愿望是合情合理的、正当的，这不同于“台湾独立”，更与极少数坚持要走“台独”道路的人有着根本的区别。极少数“台独”分子鼓吹“独立”，甚至投靠外国，妄图将台湾从中国分裂出去，这是违背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根本利益的。中国政府严重关注这一事态的发展，对任何制造“台湾独立”的行径绝不会坐视不理。

某些国际势力不希望中国统一，仍千方百计插手中国内政，支持台湾当局的“反共拒和”政策和岛内的分裂势力，为中国的和平统一制造障碍，严重伤害了中国人民的民族感情。

中国政府坚信，广大台湾同胞是要求国家统一的；台湾朝野政治力量的大多数也是主张国家统一的。在两岸人

民共同努力下,上述障碍和阻力一定可以排除,两岸关系一定可以获得更好的发展。

## 五、国际事务中涉及台湾的几个问题

如前所述,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中华人民共和国政府作为代表全中国人民的唯一合法政府,得到了联合国及世界各国的普遍承认。为维护国家主权和实现国家的统一,中国政府在国际事务中处理涉及台湾的问题时,始终坚持一个中国的原则,一贯维护台湾同胞的利益。中国政府相信,这一立场必能赢得各国政府和人民的尊重。

在此,中国政府认为有必要就以下几个问题重申自己的立场和政策。

**(一)与中国建交国同台湾的关系问题。**目前,世界上凡与中国建交的国家,均遵照国际法和一个中国的原则,与中国政府就台湾问题达成正式协议或谅解,承诺不与台湾建立任何官方性质的关系。按照国际法,一个主权国家只能有一个中央政府代表这个国家。台湾作为中国的一部分,它在国际上无权代表中国,不能与外国建立外交关系

和发展具有官方性质的关系。但考虑到台湾经济发展的需要和台湾同胞的实际利益,对台湾同外国的民间经济、文化往来,中国政府不持异议。

近几年,台湾当局在国际上竭力推行所谓“务实外交”,谋求同一些与中国建交的国家发展官方关系,推行“双重承认”,达到制造“两个中国”、“一中一台”的目的。对此,中国政府坚决反对。

应该指出,世界上绝大多数国家都能珍视同中国的友好关系,恪守在台湾问题上和中国达成的协议和谅解,中国政府对此表示赞赏。但也不能不指出,有的国家竟不顾国际信誉,违反与中华人民共和国建交时所作的承诺,同台湾发展官方关系,从而给中国统一事业设置障碍。中国政府衷心希望,有关国家的政府能够采取措施,纠正这一做法。

**(二)国际组织与台湾的关系问题。**每个国家的主权是完整的,既不能分割,也不能分享。中华人民共和国政府作为中国的唯一合法政府,有权利也有义务在国际组织中行使国家主权,代表整个中国。台湾当局企图在某些只有主权国家才能参加的国际组织中搞所谓“一国两席”,就是要制造“两个中国”。中国政府坚决反对这种行径。这一原则

立场完全符合包括台湾同胞和海外侨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根本利益。只有在坚持一个中国原则立场的前提下，中国政府才可以考虑，根据有关国际组织的性质、章程规定和实际情况，以中国政府同意和接受的某种方式，来处理台湾参加某些国际组织活动的问题。

联合国系统的所有机构，是由主权国家代表参加的政府间国际组织。在恢复中华人民共和国在联合国的合法权利后，联合国系统的所有机构都已通过正式决议，恢复中华人民共和国享有的合法席位，驱逐了台湾当局的“代表”。自此，在联合国组织中的中国代表权问题已获得了彻底的解决，根本不存在台湾再加入的问题。需要指出的是，近一个时期来，台湾当局的某些人又为“重返联合国”而大肆鼓噪。十分明显，这是一种妄图割裂国家主权的行径，它无论在法理上或实际上都是行不通的。中国政府相信各国政府和联合国系统的组织会识破这一图谋，不做有损于中国主权的事情。

其他政府间国际组织，原则上台湾也无权参加。至于亚洲开发银行(ADB)、亚太经济合作组织(APEC)等地区性经济组织，台湾的加入系根据中国政府与有关方面达成的协议或谅解，明确规定中华人民共和国作为主权国家参

加,台湾只作为中国的一个地区以“中国台北”(英文在亚行为 TAIPEI, CHINA; 在亚太经济合作组织为 CHINESE TAIPEI)的名称参加活动。这种做法属于特殊安排,不能构成其他政府间国际组织及国际活动效仿的“模式”。

在民间性质的国际组织中,中华人民共和国的相应组织同有关方面达成协议或谅解,在中国的全国性组织以中国的名义参加的情况下,台湾的相应组织可以以“中国台北”(TAIPEI, CHINA)或“中国台湾”(TAIWAN, CHINA)的名称参加。

**(三)与中国建交国同台湾通航问题。**一个国家的领空是该国领土不可分割的组成部分。1919年公布的《巴黎航空公约》和1944年签署的《芝加哥公约》均确认,每个国家对其领空具有完全的、排他性的主权的原則。因此,凡是同中国建交国家的任何航空公司,即使是私营航空公司与台湾通航,都是涉及中国主权的政治问题,而不是一般的民间关系。与中国建交国家的官方航空公司当然不可与台湾通航,而其民间航空公司如欲同台湾通航,则须由其政府与中国政府磋商。在征得中国政府同意后,其民间航空公司始可同台湾的私营航空公司互飞。实际上,根据上述原



则,中国政府已经同意英、德、加拿大等国的民间航空公司与台湾的私营航空公司通航。

有的国家在与中华人民共和国建交前就同台湾通航的,则可通过与中国政府谈判,改变其同台湾通航的官方性质后继续其民间商业运输安排。

**(四)与中国建交国向台湾出售武器问题。**中国政府一贯坚决反对任何国家向台湾出售任何种类的武器装备或提供生产武器的技术。凡与中国建交的国家,都应遵循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干涉内政的原则,而不以任何形式或借口向台湾提供武器,否则就是违反国际关系准则,干涉中国内政。

世界各国,尤其是对世界和平事业负有重大责任的大国,理应严格遵守联合国安理会五常任理事国关于限制常规武器扩散的指导原则,为维护和促进地区的和平与安全作出贡献。然而,在目前台湾海峡两岸关系日益缓和的形势下,有的国家竟违背自己在国际协议中的承诺,置中国政府的一再严正交涉于不顾,向台湾出售武器,在海峡两岸之间制造紧张局势。这不仅是对中国安全的严重威胁,为中国的和平统一事业设置障碍,也不利于亚洲和世界的和平与稳定。中国人民当然要强烈反对。

在国际事务中,中国政府一贯奉行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坚持“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五项原则,积极发展同世界各国的友好关系,从不损害别国利益,不干涉别国内政。同样,中国政府也要求各国政府,不做损害中国利益、干涉中国内政的事情,正确处理与台湾的关系问题。

## 结 束 语

中国的统一是中华民族的根本利益所在。

中国实现统一后,两岸可携手合作,互补互助,发展经济,共同振兴中华。原来一直困扰台湾的各种问题,都将在一个中国的架构下得到合理解决。台湾同胞将与祖国其他地区人民一道共享一个伟大国家的尊严和荣誉。

长期以来,台湾问题一直是亚洲与太平洋地区一个不稳定的因素。中国的统一,不仅有利于中国本身的稳定和发展,也有利于中国同各国进一步加强友好合作关系,有利于亚太地区乃至全世界的和平与发展。

中国政府相信,在维护自己国家主权与领土完整的正义事业中,一定能够得到世界各国政府和人民的理解和支持。

##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 민국 80년(1991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 민국 80년(1991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 회의 통과

### 1. 서 언

국가의 부강과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통일은 국내외 모든 중국인의 공통된 소망이다. 대만과 대륙 양측은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의 전제하에 적당한 시기에 솔직담백한 교류, 합작, 협상을 통하여 민주, 자유, 부의 균등에 대한 공통된 식견을 세우고 다함께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재건하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특별히 본 강령을 제정하는 바, 국내외 모든 중국인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다함께 본 강령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기약하자.

### 2. 목 표

민주, 자유, 균등한 부의 중국을 건립한다.

### 3. 원 칙

- (1) 대만과 대륙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중국인의 공통책임이다.
- (2) 중국의 통일은 모든 사람의 복지를 귀착점으로 하며 당파의 싸움에 그쳐서는 안된다.

- (3) 중국의 통일은 중화문화를 발양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하며 민주법치를 宗旨로 삼아 실천하는 것이다.
- (4) 중국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대만지구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시키고,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서 한걸음씩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 4. 진행과정

##### (1) 제1단계

- ① 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시키고, 호혜로서 적의를 해소시키며, 교류중에 상대방의 안전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하고, 호혜중에 상대방의 정치실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다.
- ② 대만과 대륙의 교류질서를 세우고 교류규칙을 정하고 중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양쪽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여러가지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고 양쪽 민간인들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쌍방의 사회번영을 촉진시킨다.
- ③ 국가통일의 목표아래서 양쪽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륙지구는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조금씩 여론을 개방하여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대만지구는 헌정개혁을 가속화시켜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均富사회를 건립한다.
- ④ 양측은 적대관계를 버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아래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서 상호존중하고 서로 배척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믿고 돕는 단계로 나아간다.

## (2) 제2단계

- ① 양측은 대등한 지위에서 정부측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② 대만과 대륙간에 직접 우편이 통하고, 항공로와 해로가 개통되고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공동으로 대륙 동남연해지구를 개발시키고, 나아가서 기타 지구도 점차 개발해 나감으로써 양쪽 주민들의 생활의 격차를 줄인다.
- ③ 대만과 대륙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국제조직과 활동에 참가한다.
- ④ 양측의 고위층 인사들이 상호방문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협상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 (3) 제3단계

양측에 협상통일기구를 설립하여 양쪽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정치, 자유경제, 평등사회 및 근대국가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통일대업을 함께 의논하고 헌정체제를 연구·결정함으로써 민주, 자유, 均富의 중국을 건립한다.

[  ]

# 台海 兩岸關係 說明書

( 대만의 『통일백서』 )

행 정 원  
대 륙 위 원 회

## 목 차

1. 전 언 .....	99
2. 대만해협 양안의 분단과 분치의 근원과 본질 .....	99
3. 대만해협 양안관계의 발전 .....	101
4.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환경 요소 .....	105
5. 결 론 .....	108



# 台灣海峽 兩岸關係 說明書 (要旨)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4년 7월 4일

## 1. 前 言

1949년부터 중국인민들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생활과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지역간의 대립과 단절을 제거하고 민족의 부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정부는 1987년부터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양안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 2월에는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여 전민족의 공통된 인식을 응집시키고 통일을 향한 일보를 내 디었다. 중화민국정부는 특별히 양안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기해 국내외 인사들이 중화민국 정부의 국가통일문제에 관한 사고방향과 입장과 방법을 심도있게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 2. 대만해협 兩岸의 분단과 分治의 근원과 본질

아편전쟁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孫中山 선생의 영도아래 1912년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중화민국 건국 초기는 안으로는 군벌이 할거하고 밖으로는 외세가 준동하는 등 정세가 혼란하였다. 孫中山 선생은 중국을 구하고 부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三民主義를 창안하였다. 三民主義의 이상은 아편전쟁이후 중국의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 것이었다.

1919년 소련공산당은 第3國際(The Third International)를 구성하고 세계혁명을 추진하였는 바, 인근의 중국이 그 첫번째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1921년 7월 소수의 좌경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을 창당하였고 중국공산당은 第3國際의 중국 지부가 되었다.

이로부터 공산주의는 중국에서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북벌 기간동안, 중공은 군벌할거로 야기된 국내분쟁을 이용하여 대형폭동을 일으키고 ‘무장투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중공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따로 ‘임시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국 재분열의 시작을 의미한다.

1937년 중국의 전면적인 대 일본항전 시기에 중공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근거지와 무력을 대폭 확장·증강하였다. 대일항전이 승리로 끝나자 공산당은 무장반란을 일으켜 본토를 석권하였다. 1949년 10월 중공은 북경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중화민국정부는 대북으로 천도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에서 대만해협을 경계로 일시적인 분단과 분치(각자 통치) 형태가 나타났다.

현재 양안간의 분단과 분치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중화문화를 기초로 한 ‘삼민주의 중국’과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근원을 둔 ‘공산주의 중국’ 사이의 경쟁이다. 이러한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제도 및 생활방식의 경쟁이 바로 대만해협 양안간 분열과 분치의 본질이며 오늘날 중국의 분열을 초래한 진정한 원인이다.

오늘날 중국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중공이 말하는 것처럼 대만의 일부 주민이 중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일부 국제세력의 간섭’ 때문은 더욱 아니다.

바로 중국본토의 정치제도, 경제수준 및 과거 여러차례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의 투쟁이 중국본토에 대해 믿음을 잃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정부가 왜 계속해서 ‘중국문제만 있지 대만 문제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가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 3. 대만해협 양안관계의 발전

중공은 오랫동안 대만의 무력해방을 시도하였다. 1949년 부터 중공은 수차에 걸쳐 군사적 공세를 취하면서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공의 금문도에 대한 무력점거가 실패하고, 일련의 내정과 외교상의 곤경에 처하자 ‘대만의 평화적 해방’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진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1979년 미국이 중공과의 수교로 말미암아 중화민국과 정식 외교관계가 단절되자 중공의 대 중화민국 책략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평화적인 허상을 조장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중공은 ‘대만해방’ 이라는 구호를 버리고 ‘평화통일’ 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비록 ‘평화통일’ 이라는 미명을 쓰고 있으나 중공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통일문제의 무력해결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정부는 시종 철저한 중국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 본토의 제도변경이라고 여기고 있다. 1981년 4월 집권당인 중국국민당은 ‘三民主義로 중국을 통일한다’ 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 구호와 주장은 중화민국정부의 대 본토정책의 핵심사상으로 전환되었다.

중화민국정부가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한다’ 라는 주장을 내세운 주요 이유는 경제실험의 결과 마르크스 - 레닌공산주의의 철저한 실패가 일찍이 증명되었고 삼민주의가 중국적 상황에 더 적합하며 ‘중국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대만지구의 경제자유화, 사회다원화, 정치민주화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제엄해제 이후 일련의 개방적인 본토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양안간의 상호관계는 이미 완전 단절상태에서 민간교류단계로 진전되었다.

1991년 4월 30일 李登輝 총통은 動員戡亂時期(국가비상시기)를 5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선포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대회의 결의에 따라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국가비상시기 임시헌법에 해당)도 폐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포는 두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나는 중화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솔선하여 무력방식에 대한 국가통일 추구를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화민국정부는 더이상 국제무대에서 중공과 ‘중국 대표권’ 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중국은 오직 하나’ 이나 ‘대만과 중국본토는 모두 중국의 일부분’ 이며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다’ 라는 입장으로 중국이 최후의 통일을 달성하기 전에는 쌍방이 기존의 분치상태에서 각자가 동등하게 국제사회의 권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화민국이 1912년 건국이래 국제사회에서 시종 하나의 독립주권국가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양안관계의 처리에 있어 쌍방관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단순한 국내문제와도 다르다.

양안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중화민국정부는 현실적인 ‘정치실체’의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양안간 상호 영향관계의 기초로 삼고 있다. 현재의 양안관계는 ‘主權爭議’ 문제를 잠시 다루지 않아야만 40여년간의 실마리를 풀고 순조롭게 통일을 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政治實體’ 개념은 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열쇠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전통적 관념상의 중국이 현재 이미 두개의 정치실체, 즉 자유민주체제를 실행하는 대만지구와 사회주의 체도를 실행하는 본토지구로 분열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공의 견해는 그들이 지칭하는 ‘一國’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중화민국 관할아래의 대만은 단지 중공 통치하의 일개 ‘特別行政區’로 비록 중공의 동의하에 제한적인 ‘高度自治’는 향유할 수 있으나 중공의 ‘헌법’과 중공 ‘중앙정부’의 宗旨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이 ‘一國兩制’의 목적은 중화민국을 중국정부에 완전히 귀속시키려 하는 것이며 대만지구민들이 일정 시간후에 민주 자유제도를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다.

중화민주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

동시에 중화민국정부는 양안의 분단과 분치라는 역사와 정치의 현실아래 쌍방은 각자의 통치권 행사를 충분히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도 병존하는 두개의 국제법인이라는 사실, 나아가서 쌍방관계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분단되고 분치하는 두 지역으로 ‘一國內部’ 또는 ‘中國內部’에 속하는 성질임을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아주 현실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두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양안간의 교류과정중 중공은 반드시 중화민국정부의 국가 통일 추구 목표와 결집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야 한다. 여하히 분단·분치상태의 현실기초하에서 적극적으로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두개의 상이한 ‘정치실체’를 점차 ‘하나의 중국’으로 융화시키는가가 중공당국이 시급히 고려해야 할 방향이다.

정부는 평화통일 이전에는 理性·平和·對等·互惠의 4개 원칙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성의 원칙은 바로 양안간 사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사유 방식이어야 한다. 분단국가의 통일문제 처리시, 평화, 대등, 호혜는 이성의 최대 표현이다.

독일의 통일은 바로 동·서독이 대등한 상대로 호혜교류와 분쟁의 실마리를 평화적으로 푸는 이성의 원칙아래 완성된 것으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성공사례이다.

평화의 원칙은 우리가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만해협 양안간의 상호 움직임은 이미 완전승리, 완전패배의 경쟁이 아니고, 쌍방이 각 일보씩 양보하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승리’ 경쟁이다. 무력으로 ‘영토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피상적인 사고로 민족주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자유·균부의 ‘제도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옹대하고 지속적인 민족주의이다.

대등의 원칙은 우리의 세번째 주장이다. 소위 대등이라 함은 대만지구와 본토의 중국인들이 동등한 존엄을 향유해야만 하고 동등한 존중을 받음을 가르킨다. 중화민국정부는 현재의 양안간 민간교류나 미래의 정부가 협상을 막론하고 고의로 상대방을 폄하해서는 안되며 모두 상대방 국민과 정부의 법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혜의 원칙은 우리 본토정책 추진의 네번째 입장이다. 양안간의 교류는 쌍방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 쌍방의 관계는 절대 Zero-Sum 관계가 아니며 '공동승리'를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다.

우리는 호혜에 바탕을 둔 쌍방교류만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호혜행위는 어느 일방 또는 지엽적인 사고가 아닌 쌍방 전체를 고려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

#### 4.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환경 요소

양안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체로 국제적인 것과 본토·대만의 세가지 상이한 요소로 나눌수 있다.

국제요인을 보면, 1990년대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에게 수용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소련의 해체 및 동구 비공산화의 기본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냉전체제 종식후 국제사회는 양안간의 분단과 분치현실을 이성적으로 보기시작 했으며, 중공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의 중화민국의 역할 및 대만 해협의 안전에 아시아 정세의 안정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관계중의 경제의존성 역시 양안관계 정세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상의 통합과 분리추세도 양안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대만지구의 경우, ‘국가통일강령’의 통과는 우리의 사상조류 통합에 대한 긍정이며, 상대적으로 대만독립의 주장은 분리추세의 극단화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주관적으로는 통합추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 두 추세에 대한 대만지구 인민들의 수용정도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이 달려있는 것이다.

본토지역의 정세발전과 중공의 대만정책을 살펴 보자. 중공은 비록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4個堅持’를 고수하면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본토의 경제·재정위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빈부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치적 좌경화, 경제적 우경화’ 노선이 초래한 후유증이다. 향후 본토내부 정치정세의 방향은 대만지구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줄 것이다.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공의 지도자들은 대만에 대한 무력동원 협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밖에 중공은 시종 고의로 중화민국의 국제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적대감에 가득찬 행위는 중화민국의 대외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대만지구에서 중공정권에 대한 혐오심리를 더욱 증폭시켜 오히려 국가통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미래 대만지구의 정치·경제의 발전을 보면, 최근 몇년간 중화민국은 대만에서 ‘조용한 혁명’의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부유와 인권존중 및 법치 민주사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제력과 사회문화의 활력은 민주자유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어 일면 세계를 향해 ‘務實外交’의 길을 열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본토를 향해 양안간의 각종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중공이 이러한 因果關係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만지구의 민주화과정을 계속 기만하거나 능멸하면서 중화민국의 대외관계에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처사는 최근 대만지구의 정치·경제발전 조류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만지구민들의 진정한 희망과 복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통일, 나아가서 양안간의 정상적인 교류에도 반드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만지구는 이미 민주화된 다원사회로 야당도 입법원에서 상당비율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그 정치적 주장은 필연적으로 본토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인식과 양안관계 문제에 있어 조야 정당간에는 약간의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각당간의 본토정책에 비록 다른 견해가 있다하더라도 그 목적은 모두 대만지구민의 복지향상에 있다. 따라서 정치적 주장을 제기할 때는 각 정당은 모두 2천1백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 5. 결 어

해협양안의 분단과 분치는 중화민족의 불행이다. 우리는 중공이 경제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본토의 동포들을 하루속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중공이 진솔하게 양안간의 일시적 분단과 분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성·평화·대등·호혜의 원칙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만이 양안의 평화통일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중공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무력위협과 전란이 절대로 전체 중국인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다. 통일의 이름을 빌려 무력에 호소하게 되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통일의 최대 의의를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영구적인 발전 추구뿐 아니라 전체 중국인이 모두 민주·자유와 균부의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추호의 가치와 의의가 없는 일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건데, 중화민국정부는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힘을 다해 양안관계를 추진할 것이며 양안간의 양성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민이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고 본토지구의 정치·경제·사회의 현대화 발전을 가속화시켜 민주·자유·균부를 전제로 한 중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臺海兩岸關係說明書(摘要)

行政院大陸委員會 編印  
中華民國八十三年七月

## 一、前言

自民國三十八年起，中國人民以臺灣海峽爲界，分別生活在意識形態不同，政治、經濟、社會制度迥異的兩個社會。爲了消除兩岸的對立和隔閡，謀求民族富強，中華民國政府自民國七十六年起採行具體措施，推動兩岸交流。民國八十年二月，制訂「國家統一綱領」，用以凝聚全民的共識，邁開追求統一的步伐。中華民國政府特將兩岸關係作一詳盡說明，期使海內外人士深入了解我政府對國家統一這個問題的思考方向、立場與作法。

## 二、臺海兩岸分裂分治的根源與本質

鴉片戰爭後，中國有識之士在孫中山先生領導下，於西元一九一二年建立中華民國。

中華民國建國初期，內有軍閥割據，外遭列強欺凌，局勢動盪不安。孫中山先生爲救中國、圖富強，創著三民主義。三民主義的理想，爲鴉片戰爭以後「中國往何處去」的問題，提供了正確的方向。

民國八年，蘇聯共黨成立第三國際，推動世界革命，鄰近的中國便首

當其衝。民國十年七月，少數左傾知識分子成立中國共產黨，為第三國際的中國支部。自此，共產主義開始在中國的土地上蔓延。

北伐期間，中共利用軍閥割據造成的國內紛爭，製造大型暴動，走上利用「武裝鬥爭」手段奪取政權的道路。民國二十年十一月，中共成立「中華蘇維埃共和國」，自行制定「憲法」，另外組成「臨時中央政府」，此舉代表中國再度分裂的開始。

民國二十六年，中國全面對日抗戰，中共藉機大肆擴展根據地與武力。抗戰勝利後，共產黨武裝叛亂，席捲大陸。民國三十八年十月，中共在北平建立「中華人民共和國」；中華民國政府播遷臺北。中國遂以臺灣海峽為界暫時形成分裂分治之勢。

現在兩岸的分裂分治，究其本質，實為以中華文化為基礎的「三民主義中國」與以馬列主義為根源的「共產主義中國」之爭。這種不同的政治、經濟、社會制度與生活方式之爭，乃是臺海兩岸分裂分治的本質，也是今日造成中國分裂的真正原因。

今天中國之所以不能統一，不是如中共所指稱臺灣部分居民想脫離中國，也不是「某些國際勢力干涉」，而是大陸的政治制度、經濟水準以及

過去多次腥風血雨的大規模鬥爭，讓人對它缺乏信心。這也就是爲什麼中華民國政府一再強調：「只有中國問題，沒有臺灣問題」的根本原因。

### 三、臺海兩岸關係的發展

中共長期試圖以武力「解放台灣」。民國三十八年起，中共數度發動軍事攻擊，一直想以武力完成統一。在以武力奪取金門的企圖失敗後，中共遭逢一連串內政和對外關係上的困境，除高喊「和平解放台灣」的口號外，無力採取進一步的軍事行動。

民國六十八年由於美國與中共建交，並中斷與中華民國正式外交關係，中共對中華民國的策略出現了重大的變化。爲了在國際間營造和平假象，在對臺宣傳上，中共放棄了「解放台灣」的口號，改以「和平統一」一詞代之。雖然以「和平統一」爲名，但中共迄今仍不承諾放棄以武力解決統一問題。

中華民國政府始終認爲，徹底解決中國問題的關鍵在中國大陸制度的更張。民國七十年四月，執政黨中國國民黨提出「以三民主義統一中國」的號召，這項號召與主張隨即轉化爲中華民國政府大陸政策的核心思想。

中華民國政府主張「以三民主義統一中國」的主要理由，是因為經實驗的結果，早證明馬列共產主義徹底失敗，而三民主義更適合中國國情，也才能解決「中國問題」。

進入民國七十年代之後，臺灣地區經濟自由化、社會多元化、政治民主化的發展加速，並在解除戒嚴後，實施一連串的開放性大陸政策。此後，兩岸互動關係已從完全隔絕進展到民間交流。

八十年四月三十日，李總統登輝先生宣告動員戡亂時期於五月一日零時終止，並依據國民大會之決議，宣告同時廢止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這個宣告有兩個重大含義：第一，表示中華民國政府正式而且率先片面放棄以武力方式追求國家統一；第二，中華民國政府不再在國際上與中共競爭「中國代表權」。中華民國政府認為「中國只有一個」，但「臺灣與大陸都是中國的一部分」，「中共不等於中國」，在中國尚未達成最後的統一以前，兩者既處於分治局面，理應各自有平行參與國際社會的權利。

中華民國自西元一九一二年創立以來，在國際間始終是一個具獨立主權的國家，這是個不爭的歷史事實。但是，在兩岸關係的處理上，雙方既

不屬於國與國間的關係；也有別於一般單純的國內事務。爲使兩岸關係朝向良性互動的方向發展，中華民國政府務實地提出「政治實體」的概念，作爲兩岸互動的基礎。現階段兩岸的互動，唯有暫時擱置「主權爭議」的問題，才能解開四十餘年的結，順利朝統一的方向發展。而「政治實體」概念正是解開這個結的根本關鍵。

中華民國政府認爲，傳統觀念的中國現已分裂爲兩個政治實體，即實行民主自由體制的臺灣地區，以及實行社會主義制度的大陸地區。依照中共的說法，其所稱的「一國」是指「中華人民共和國」，中華民國管轄下的臺灣，則只是中共統治下的一個「特別行政區」，雖可在中共的同意下享受有限的「高度自治」，但不能違背中共的「憲法」與中共「中央政府」的旨意。明確地說，「一國兩制」的目的，是要中華民國向中共全面歸降，要臺灣地區人民在一定時間後放棄民主自由制度。因此，中共的這項主張，主觀上我們絕不接受，客觀上也不可行。

中華民國政府堅決主張「一個中國」，反對「兩個中國」與「一中一台」。中華民國政府同時也主張在兩岸分裂分治的歷史和政治現實下，雙方應充分體認各自享有統治權，以及在國際間爲併存之兩個國際法人的事



實，至於其相互間之關係則為一個中國原則下分裂分治之兩區，是屬於「一國內部」或「中國內部」的性質。我們的主張極其務實；這些主張亦與「兩個中國」或「一中一台」的意涵完全不同。

在兩岸交流過程中，中共應祛除對中華民國政府追求國家統一目標與決心的懷疑。如何在分裂分治的現實基礎上，積極營造統一的有利條件，使兩個不同「政治實體」逐漸融合為「一個中國」，應當是中共當局急需思考的方向。

在和平統一之前，中華民國主張以理性、和平、對等、互惠四項原則處理兩岸關係。

理性原則應是處理兩岸事務的基本思維方式。對分裂國家而言，處理統一問題時，和平、對等、互惠原則是理性的最大表現。德國統一即是在東西德對等相待、互惠交往與和平解決爭端的理性原則下完成，是一個值得學習的成例。

和平原則是我們處理兩岸關係的最根本原則。臺海兩岸的互動，已非全贏或全輸的競賽，而是雙方各讓一步，各謀其利的「雙贏」競賽。以武力追求「領土的統一」，是以膚淺狹隘的思維曲解了民族主義的真諦；以

和平方式追求民主、自由、均富「制度的統一」，才是可大可久的民族主義。

對等原則是我們的第三項呼籲。所謂對等，是指在臺灣地區及大陸地區的中國人應享有同等的尊嚴，並受到同等的尊重。中華民國政府認為，無論是目前兩岸民間的交流，或是未來政府間的協商，均應在尊重對方人民與政府法制的原則下進行，不應刻意矮化對方。

互惠原則是我們推動大陸政策的第四項立場。兩岸交流應滿足雙方的利益，兩者之間絕非「零和」關係，而應是「雙贏」的互動。我們相信，唯有在雙方互惠的前提下交流，才能互信互諒，可大可久，日進有功。互惠行為不應只是單向的或局部的思考，而必須從雙向與整體考量。

#### 四、影響兩岸關係的內外環境因素

影響兩岸關係發展的因素，大致可分為國際、大陸與臺灣三組不同因素。

就國際因素而言，民國八十年代，共產主義已證明不為人類所接受。蘇聯的解體及東歐的非共化，基本原因即在此。而在冷戰後的世界格局中

，國際社會亦開始理性地看待兩岸分裂分治的事實，並了解到中華民國在中共改革開放過程中所能發揮的作用，以及臺海安全對亞洲局勢穩定及亞太經濟發展的重要性。此外，國際關係中的經濟互賴特質，亦有助於兩岸關係的緩和。

國際政治中的統合與分離趨勢，也是影響兩岸關係發展的因素。對臺灣地區而言，「國家統一綱領」的通過，是我們對統合思想潮流的肯定；相對地，臺灣獨立的主張，也受到分離趨勢的激化。主觀上，中華民國政府認為追求統合是我們應走的道路；但客觀上，這兩股趨勢為臺灣地區人民接受的程度，將取決於兩岸關係的發展。

就大陸地區的情勢發展與中共對臺政策而言，中共雖決定建立「中國式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但它在政治上仍堅守「四個堅持」，以維持中共一黨專政。近幾年來，大陸經濟財政危機不斷，貧富差距逐漸擴大，社會問題叢生，均是這種「政左經右」路線造成的後果。未來，大陸內部政治情勢的走向，將影響到臺灣地區人民對統一問題的看法。

從民國三十八年迄今，中共領導人從未放棄對臺動武的恫嚇。此外，中共始終刻意封殺中華民國的國際活動空間，中共這種充滿敵意的行爲，

不僅不能切斷中華民國的對外關係，反而會在臺灣地區不斷激起更多、更大厭惡中共政權的心理，阻礙了國家統一的進程。

就臺灣地區未來的政經發展而言，最近幾年來，中華民國在臺灣可以說經歷了一個「寧靜革命」的過程。在經濟上、政治上，均成功地實現了中國歷史上第一個富裕、尊重人權與法治的民主社會。蓄積已久的經濟實力與社會文化活力，透過民主自由的過程釋放出來以後，一面迎向世界，走出「務實外交」的道路；一面迎向中國大陸，成爲擴大兩岸民間各項交流的重要觸媒。

可惜中共不但不曾理解這個因果關係，反而一直醜化或詆譏臺灣地區的民主化過程，然後又蠻橫地干涉中華民國的對外關係。這種做法，既無視於臺灣地區近年來政經發展的潮流，也完全不顧臺灣地區人民的真正意願和福祉。長此以往，對中國統一，甚至兩岸正常交流，必然會導致難以逆料的負面影響。

臺灣地區已是民主化的多元社會，在野黨在立法院中已擁有相當比例的席位，其政治主張必然關係到大陸政策的制訂。在國家認同與兩岸關係問題上，朝野政黨存在若干不同的看法。各黨派對大陸政策雖有不同意見

，但其目的都是提升臺灣地區人民的福祉。在提出政治主張時，各黨都不能不慎重考慮它對二千一百萬人民生命安全與福祉的影響。

## 五、結論

海峽兩岸的分裂分治，是中華民族的不幸。我們呼籲中共加速推動經濟改革、從事全盤政治改革。唯有如此，才能使大陸同胞早日脫離貧窮匱乏，過著具有人性尊嚴的生活。我們也呼籲中共，要坦然體認到兩岸暫時分裂分治的事實，以理性、和平、對等、互惠的原則，推動兩岸關係的發展，才能為兩岸和平統一創造契機。

我們認為，武力威脅和戰亂，絕非全體中國人所願見。假統一之名而訴諸武力者，必將成為中華民族的歷史罪人。

我們認為，中國統一的最大意義，不但在於謀求國家的富強與民族長遠的發展，而且在使全體中國人民都能享有民主、自由與均富的生活。不能達此目標，統一毫無意義與價值。

回顧過去，展望未來，中華民國政府將繼續秉持既定的立場，盡力推動兩岸關係，促使兩岸互動良性發展。深信經由我全民的智慧與努力，必

可開創新局，加速大陸地區政治、經濟、社會的現代化發展，進而完成在民主、自由、均富下統一中國的神聖使命。

중국 ·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기구

< >

中央 臺灣工作領導小組

- 0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공식 협의체 (1949. 10 설립)
- 0 중국의 대만정책 · 통일정책을 심의 ·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기관
  - 당 통일전선부,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海峽兩岸關係協會 등의 정책 건의에 기초, 양안간 교류 · 협력 및 통일정책을 심의 · 결정
- 0 구성 : 국가주석 (江澤民), 외교부장 (錢其琛), 대만공작관공실 주임 (王兆國), 국가안전부 부장 (賈春旺) 등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0 대만공작영도소조의 지침을 받아 대만정책, 통일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종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1988. 8 설립)

<국무원 대만판공실 조직·기능·인적구성>

내부조직	주요기능	책임자
비서국	조직내의 일반 사무	王富卿
聯絡局	대만 유력인사 접대 및 통일전선	王永海
統合局	대만 『海基會』와의 교섭업무 처리	趨哲開
교류국	양안간 교류활동의 안배 및 심사	張金成
交往局	대만인들의 대륙내 경제·무역활동 및 관광중에 파생된 문제처리	楊栢森
新聞局	대만에 대한 홍보 및 대만기자의 대륙취재 허용 심사	張銘清
경제·과학기술국	양안의 경제무역정책 및 과학기술 합작관련 사무처리	劉震濤
연구국	對대만정책 수립, 대만내부 정세 분석	邢魁山

海峽兩岸關係協會

- 0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로 약칭)는 1990. 11 대만이 설립한 반관반민의 『海峽交流基金會』(海基會로 약칭)의 교섭상대로 설립(1991. 12 설립)



- 0 기능 : 대만이 三不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측 海基會와의 접촉을 통하여 양안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三通 및 정부차원의 협상분위기를 조성
- 0 조직 : 회장 (汪道涵), 부회장, 비서장, 연구부, 연락부, 협조부, 종합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

< **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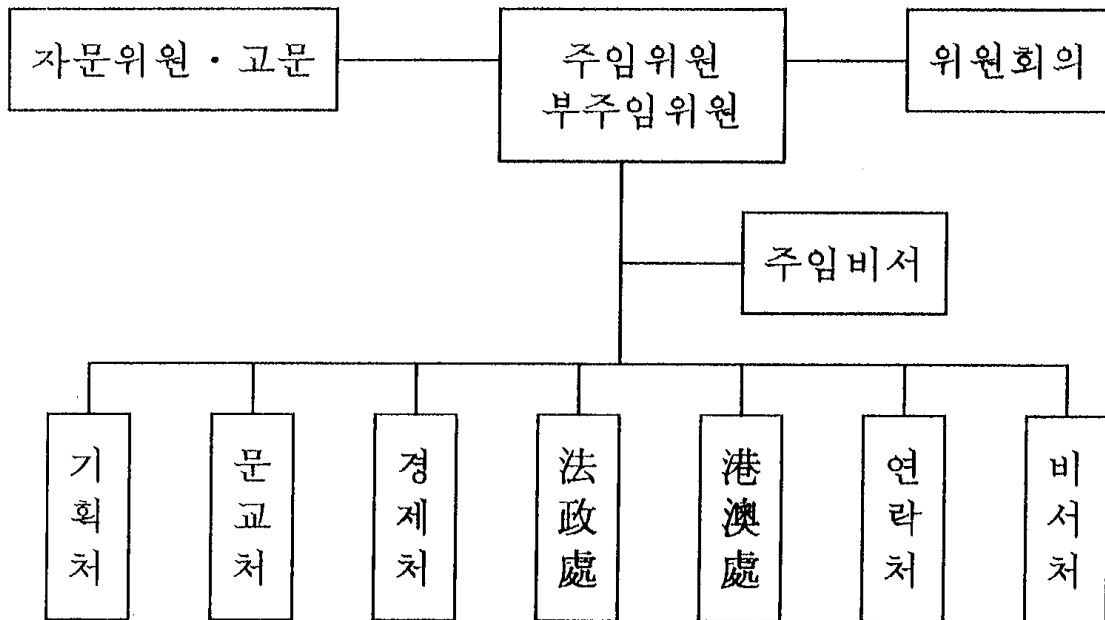
國家統一委員會

- 0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최고지도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관(1990. 9 설립)
  - 형식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만의 대륙정책·통일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 발휘 (중국의 『대만공작영도소조』의 기능과 유사)
- 0 조직 : 주임 (총통), 부주임 3명 (부총통, 행정원장, 총통의 초빙인사) 위원 (25-31명), 연구위원 등
- 0 운영 : 2개월마다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行政院 大陸委員會

- 0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실무기관 ('91. 1. 28 설립)

< 대륙위원회 조직도표 >



< 7개 처의 주요 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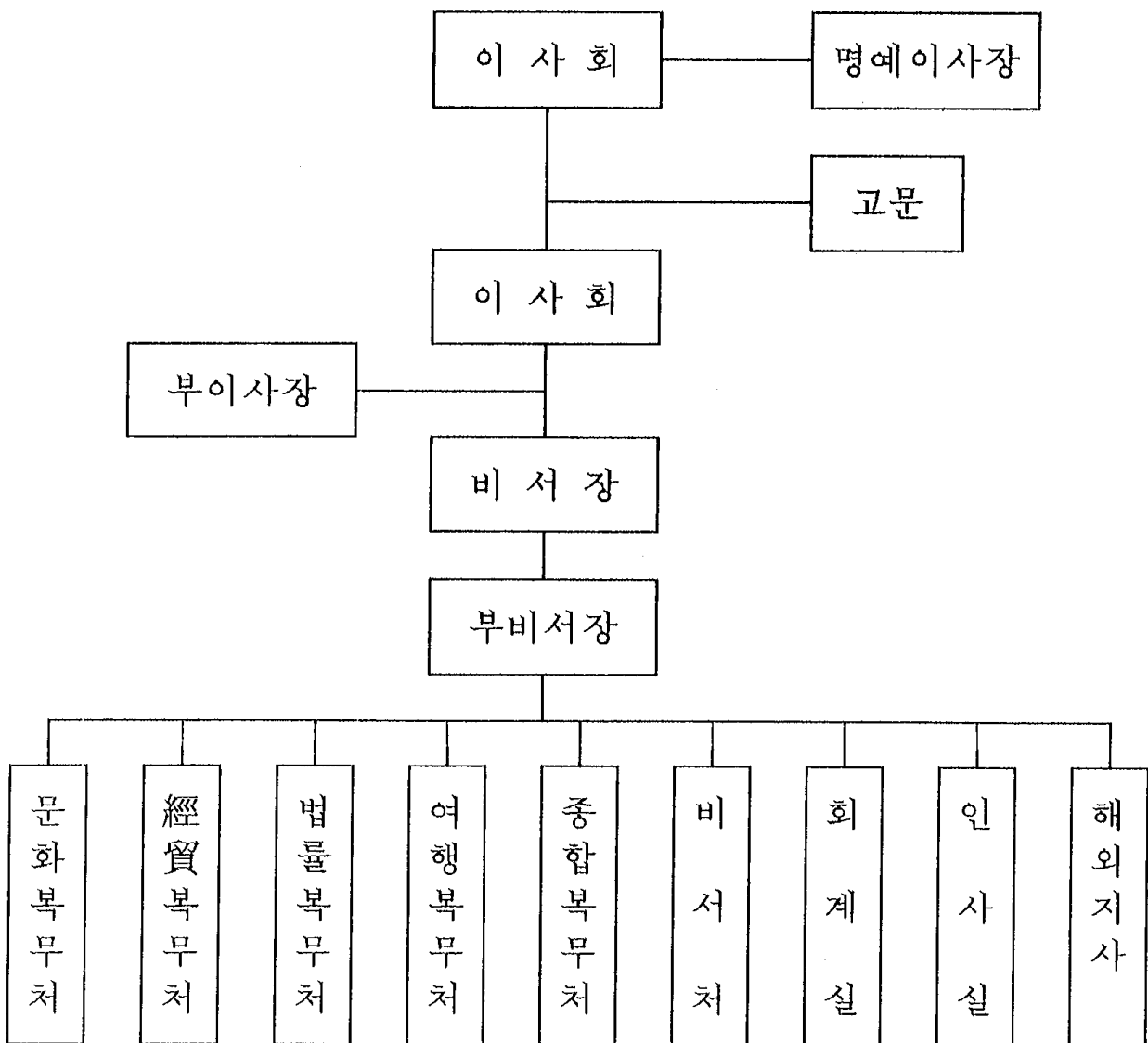
처 명	주 요 업 무
기획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대륙정책의 연구 및 종합적 계획수립</li> <li>0 대륙내 정세분석</li> <li>0 해외 중국연구기관과의 접촉</li> <li>0 중국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출판</li> <li>0 양안의 자원이용·개발계획 수립</li> </ul>

처 명	주 요 업 무
문교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양안의 학술·문화·교육·체육·언론교류의 심의</li> <li>0 대륙정책중 문교와 관련된 정책 추진</li> </ul>
경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양안의 재무·금융·경제무역·교통·농림수산업·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교류 추진</li> <li>0 대륙정책중 경제관련 정책 추진</li> </ul>
법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양안의 법적·내정·위생 및 노무관련 업무추진</li> <li>0 양안의 인적교류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심의</li> <li>0 대륙의 법제 연구</li> </ul>
항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對홍콩·마카오정책의 계획·수립</li> <li>0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업무추진</li> <li>0 홍콩·마카오주민들과의 연계 및 지원정책 추진</li> </ul>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대륙정책의 홍보</li> <li>0 해외에 거주하는 대륙주민·단체들과의 연계 추진</li> <li>0 대륙관련 업무의 연락 담당</li> </ul>
비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의사일정 및 사무관리 담당</li> <li>0 각종 문서, 인사관리</li> </ul>

海峽交流基金會

- 0 海基會는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삼불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에서 파생되는 각종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묘책으로 설립 ('90.11)
- 0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조직이나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 위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측 海協會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해협교류기금회 조직도표



## 0 주요업무

- ① 양안주민의 상호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심사 및 관련서류의 발급
- ②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관계 증명 및 소송서류의 송달, 양안간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 ③ 중국내 경제무역관련 정보 수집·배포, 양안의 간접무역·투자상의 분규해결 협조
- ④ 양안주민의 문화교류 지원
- ⑤ 대만주민의 중국내 체류기간중 합법적인 권익보장 지원
- ⑥ 양안의 인적교류에 관한 자문
- ⑦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

## Mainland Policy & The Mainland Affairs Setup

Functions	Organizations	Areas of responsibility
<p>Consultation &amp; research</p> <p>Policy-making</p> <p>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p> <p>Implementation (at present, direct contacts with the mainland authorities and business in the mainland are handled by the SEF)</p>	<pre> graph TD     President[President] --- Coordination1[...]     Coordination1 --- NUC[National Unification Council]     NUC --- Coordination2[...]     Coordination2 --- EY[Executive Yuan]     EY --&gt; MAC[Mainland Affairs Council]     EY --&gt; OM[Other ministries]     MAC --- Coordination3[...]     Coordination3 --- SEF[Straits Exchange Foundation (private body)]     OM --- Coordination3     </pre>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right: 5px;"></span> Coordination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2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Direction         </p>	<p>Deliberation of overall unification policy</p> <p>Formulation of mainland policy and promotion of mainland affairs</p> <p>MAC: In charge of research, planning,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overall mainland policy and some aspects of policy implementation.</p> <p>Other ministries: Researc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ainland policy within their individual fields of competence.</p> <p>SEF: Appointed by the government to offer technical and functional services related to cross-Strait people-to-people exchanges in areas touching on government authority.</p>

[ 자료 6 ]

양안관계 현황자료 (통계)

## 兩岸直接投資統計

項 目	金 額		家(件)數
	億 美 元	%	
一、大陸地區統計(協議)	*		
1.外商赴大陸地區直接投資累計 (1979 - 1994年上半年)	2,654	100	19.3 萬
2.台商赴大陸地區直接投資累計 (1979-1993年底)	189.4	7.1	2.12萬
二、台灣地區統計(核准)			
1.廠商對外投資累計 (民國77-83年6月底止)	82.8	100	12,081
2.廠商對大陸投資累計 (民國80-83年6月底止)	40.2	48.6	10,362
3.83年1至6月台商赴大陸投資分析	4.347	100	532
(1)產業別			
一級產業(農林漁牧)	0.01	0.2	1
二級產業(工、礦、建築業)	4.03	92.7	487
食品及飲料製造業	0.949	21.8	55
基本金屬及金屬品製造業	0.60	13.8	47
電子及電器產品製造業	0.515	11.8	82
塑膠製品製造業	0.339	7.8	44
精密器械製造業	0.335	7.7	50
其他	1.292	29.7	209
三級產業	0.307	7.1	44
(2)地區別			
江蘇省(包括上海)	1.671	38.4	149
廣東省	1.101	25.3	131
河北省(包括北平及天津)	0.399	9.2	54
其他地區	1.176	27.1	198

資料來源：大陸地區：「中國」統計年鑑1993、大陸經貿月刊23期、  
 中共1993年統計公報及兩岸經貿通訊月刊83年8月號  
 台灣地區：中華民國對外投資暨對大陸間接投資統計月  
 報(83年6月)

註\*：1993年底大陸外商直接投資協議金額累計為2,214億美元，實到金額  
 累計為601億美元

海基會經貿處製作(83年 8月29日)

830829\30001424.t



# 台海兩岸貿易統計估算表

單位：百萬美元；%

項 目 別 年 別	台灣對大陸出口估計			大陸經香港 轉口輸入台灣			兩岸貿易總額			兩岸貿易 餘額
	金 額	較 上 年 增 減 %	占我出口 金 額 %	金 額	較 上 年 增 減 %	占我出口 金 額 %	金 額	較 上 年 增 減 %	占我出口 金 額 %	金 額
1981	384.2	81.08	--	75.2	9.35	--	459.4	--	--	309
1982	194.5	(-)42.08	--	84.0	27.89	--	278.5	(-)39.38	--	110.5
1983	157.8	(-) 2.84	--	89.9	28.00	--	247.7	(-)11.06	--	67.9
1984	425.5	170.73	--	127.8	42.92	--	553.3	123.37	--	297.7
1985	986.8	131.36	3.21	115.9	(-) 9.51	0.58	1,102.7	99.29	2.17	870.9
1986	811.3	(-)17.18	2.04	144.2	24.43	0.60	955.5	(-)13.35	1.49	667.1
1987	1,226.5	51.17	2.28	288.9	100.35	0.83	1,515.4	58.59	1.71	937.6
1988	2,224.2	81.34	3.67	478.7	65.68	0.96	2,702.9	78.36	2.45	1,745.5
1989	3,244.8	45.85	4.89	586.9	22.60	1.12	3,831.7	41.76	3.23	2,657.9
1990	4,171.3	28.55	6.21	765.4	30.41	1.40	4,936.7	28.83	4.05	3,405.9
1991	6,928.3	66.09	9.09	1,125.9	47.11	1.79	8,054.2	63.14	5.79	5,802.4
1992	9,696.8	39.95	11.90	1,119.0	(-) 0.62	1.55	10,815.8	34.28	7.05	8,577.8
1993	12,727.8	31.25	14.88	1,103.6	(-) 1.38	1.41	13,831.4	27.88	8.44	11,624.2
1994(1-7月)	8,161.8	12.6	15.9	700.7	15.2	1.5	8,962.5	12.8	8.9	7,461.1

資料來源：經濟部國貿局、香港海關統計

註：台灣對大陸出口估計 = 台灣經香港轉口輸入大陸 + 我對大陸直接輸出 + 台港統計差異之八成

海基會經貿服務處83、11、8製作

830706\30001117.T

# 兩岸交流統計資料—經貿類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兩岸轉口貿易	百萬美元	1,103	956	1,516	2,721	3,483	4,044	5,793	7,407	8,689	*民國83年1-6月共計4,569百萬美元(香港政府統計處),6,936百萬美元(中共海關統計)	香港政府統計處
兩岸轉口貿易估計	百萬美元	1,103	955	1,705	2,721	3,919	5,160	8,619	11,667	15,097	*民國83年1-6月共計8,095百萬美元	陸委會依據台港海關統計估算
兩岸貿易	百萬美元									14,395		中共海關統計
中華民國對外貿易總額	百萬美元						121,930	143,375	153,480	162,022	民國83年1-5月共計70,493萬美元	財政部統計處
台海兩岸貿易依存度估計(台海兩岸貿易總額估計/台灣對外貿易總額)	%	2.17	1.49	1.92	2.47	3.31	4.23	6.20	7.60	9.32	*民國83年1-6月為9.59%	香港政府統計處,財政部進出口貿易統計

-135-

## 資 料 來 源

- 1992年 — 中國大陸為世界第十一位,台灣為世界第十四位貿易國家(地區)
- 1993年 — 中國大陸為世界第十一位,台灣為世界第十三位貿易國家(地區)

英文中國日報83、4、20,P.1  
兩岸經濟統計日報取自GATT秘書處

- 在貿易依存度方面,台灣對大陸由1992年的8.1%升至1993年的9.3%;反觀大陸對台灣的依存度,由1992年的4.47%降至1993年的4.44%

中央日報83、5、20,P.4

\* 台灣地區經香港轉口輸往大陸前十項產品統計  
(一九九四年一至六月)

順序	商 品 名 稱	金 額 (千美元)	比 重 (%)
1	纖維素衍生物或其他人造塑膠材料塗布織布	220,222	5.55
2	含絲狀合成纖維布	173,584	4.38
3	其它針織品或鉤針織品	142,954	3.61
4	聚氯乙烯板、片(片條狀)、膜或箔(P.V.C)	128,433	3.24
5	丙烯酸-丁二烯-苯乙烯共聚物	127,666	3.22
6	經捲曲加工之絲狀聚酯纖維，非零售用	121,095	3.05
7	裝有輔助動力之腳踏車(50cc-250cc)	87,991	2.22
8	無線傳輸器具之零配件	86,919	2.19
9	絲狀合成纖維、車胎簾布	85,882	2.17
10	牛馬類之皮革	65,062	1.64

資料來源：香港政府統計處

大陸地區經香港轉口輸入台灣前十項產品統計  
(一九九四年一至五月)

順序	商 品 名 稱	金 額 (千美元)	比 重 (%)
1	中草藥	33,151	6.79
2	鞋靴半成品及其零件	24,115	4.94
3	鳥類羽毛	22,000	4.51
4	以棉花為主混紡料之梭織布	21,340	4.37
5	其他變電器	18,655	3.82
6	攝影機及閃光器之配件	9,549	1.96
7	生鮮活魚(以鰻魚苗為主)	8,691	1.78
8	其它感應器	8,087	1.66
9	無線傳輸器具之零配件	6,181	1.27
10	棉紗	5,894	1.21

資料來源：香港政府統計處

830830\60001429.t

# 兩岸交流統計資料—投資類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79年~1993年台商赴大陸投資													
①經我核准投資金額—35.89億美元 (至83年5月底39.62億美元)	萬美元 (件)							17,416 (237)	24,699 (264)	316,841 (9,329)	*截至83年7月底，台商申請赴大陸投資的核准件數10,417件(共計4,056,470百萬美元)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②台商赴大陸實際投資金額—約80億美元											*民國83年1-7月台灣地區核准對外投資金額為14.99億美元，其中對大陸地區核准投資金額為4.67億美元，占我核准對外投資總額的31.13%，位居第一位		
大陸地區外商投資金額													
①利用外資協議(合同)金額	百萬美元 (總額)							19,582	69,439	123,278		中共1992年「中國統計年鑑」、 「中國經濟新聞」、中共「對外貿易經濟合作部」 出版之「國際貿易」	
	百萬美元 (台灣)							1,392	5,548	2,130 (1-3月)			
②利用外資實際金額	百萬美元 (總額)						10,289	11,554	19,202	15,080 (1-9月)			
	百萬美元 (台灣)							471	1,053	308 (1-3月)			

## 兩岸間接匯款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兩岸間接匯款（個人匯出款）	萬美元							8,201	20,447	23,822	* 包括贖家匯款、捐贈及其他移轉性支付、不包括旅行支票。民國83年1~7月共計18,422萬美元。	中央銀行外匯局
	件									73,664	* 民國83年1~7月共計56,227件	

### 資 料 來 源

- 陸委會副主委高孔廉83、4、15指出台灣地區民眾赴大陸地區探親旅行的支出，每人在大陸消費以新台幣五萬元計算，到八十三年初，六百萬人次的旅行支付金額高達美元 120億元。有正式紀錄者為79年5月後透過台灣地區銀行匯款至大陸地區者，根據中央銀行統計，到82年9月其金額累計數約為5億多美元，若再加上其他無統計數字者，估計應達20億美元。  
自由時報83、4、16，P.3
- 財政部次長李仲英83、5、23在「大陸經濟金融事務研討會」上指出根據統計，從79年5月到83年2月底，自台灣間接匯往大陸的金額高達6億 1,300餘萬美元，總數有26萬餘件。如果將間接匯出款分成兩階段（第一階段是79年5月至82年7月底，僅指個人匯款；第二階段是82年8月到83年2月，指個人匯款加上廠商匯款），每月平均的匯出件數從5,400餘件增加為7,800餘件，每月平均匯出金額由1,100餘萬美元增至2,500餘萬美元。間接匯入款從82年8月開放至83年2月底為止，累計的匯入件數為 1,100餘件，累計匯入款3,600餘萬美元。每月平均匯入件數160餘件，每月平均匯入金額520餘萬美元。  
聯合報83、5、24，P.6
- 根據陸委會委託學者所作的研究報告指出，截至1993年止，新台幣在中國大陸的流通量，據推估約有50億元左右，約占我國通貨發行額的百分之一。  
中國時報83、8、18，P4

# 兩岸交流統計資料—社會類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兩岸人員交流	萬人次									累計 → 600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香港中國旅行社
①申請臺胞證人次	人次				430,766	530,534	925,768	995,714	1,511,990	1,541,628	* 累計至1993年為593萬人次，累計至1994年7月為6,611,400人次	香港中國旅行社
②大陸同胞來台人數	人次									累計 → 55,438	* 累計至1994年9月30日核准人數為77,930人次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國人前往大陸地區(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核准人數)	人								6,965	420,948	* 自開放至83年9月30日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核准506,555人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大陸地區人民來台探病探親奔喪定居(核准人數)									12,936	15,493	* 自開放至83年9月30日核准64,973人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①探病奔喪	人								7,031	9,190	* 自77年11月9日至83年9月30日核准36,911人	
②公務員大陸親屬來台探親	人								4,222	3,968	* 自開放至83年9月30日核准20,093人	
③滯留大陸台胞來台探親	人								534	506	* 自開放至83年9月30日核准3,174人	
④大陸同胞定居	人								1,149	1,829	* 自開放至83年9月30日核准4,795人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大陸配偶來台居留(核准人數)	人								380	349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大陸地區人民非法入境情形												
①緝獲收容	人次			762	2,260	3,384	5,626	3,998	5,446	5,944	88年至8月31日止緝獲收容2,268人，遣返3,490人。 從76年至88年8月31日共緝獲收容29,688人，遣返28,789人。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②遣返	人次			760	1,978	3,664	5,057	4,409	3,445	5,986		

資 料 來 源

— 中國災胞救助總會自81年1月1日至83年5月31日受理大陸配偶申請來臺依親居留之申請人數3,669人，核准人數770人。

中國災胞救助總會大陸  
同胞來台服務處

830810\60001344.H

## 兩岸通話、信、報量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兩岸通話量	萬通					150	883	1,674	3,050	4,796	民國83年1~7月為 2,583萬封(來話僅統 計至4月)	交通部國際電信管理 局
兩岸通信量	萬封					1,081	1,325	1,517	1,822	1,740	民國83年1~8月共計 1,331萬封	交通部郵政總局
兩岸通報量	通						84,873	96,825	102,046	66,869	民國83年1~7月為 21,249通(來報僅統計 3、4月)	交通部國際電信管理 局

— 中共郵電部官員指出，台灣與大陸的通話頻繁，去年台灣已躍居大陸對外通話的第二位，僅次香港，去年從大陸打到台灣的電話數約有2,490萬通， 聯合報83、8、12、P.10  
今年一月至六月則已達2,173萬通。



其他

資料來源

82年海峽兩岸經濟發展比較：	台灣地區	中國大陸	單位
國民生產毛額(GNP)	2,201	5,446	億美元
平均每人國民生產毛額	10,566	462	美元
經濟成長率	5.9	13.4	%
貿易總值	1,620.3	1,958.0	億美元
出口	849.5	918.0	億美元
進口	770.8	1,040.0	億美元
零售物價指數上漲率	2.9	13.0	%
居民生活費用價格指數 上漲率	—	14.7	%
出(入)超	78.7	-122.0	億美元
貿易依存度	5.4	4.4	%
出口依存度	8.9	1.2	%
進口依存度	1.4	7.3	%

資料來源：行政院主計處

經濟日報83、5、7

P.6

— 根據新華社引述世界旅遊組織統計，從1985年至1993年間，赴大陸的海外遊客年平均增長率一直居世界首位，達13%，年旅遊外匯收入高達46.7億美元。1978年至1993年，大陸的國際旅遊業外匯收入年均增長21%，也是世界第一。

工商時報83、5、24

P. 9

◆聯合報調查民眾對兩岸關係和台灣前途的看法

資料來源

聯合報 83、4、18  
P.2

1. 請問您覺得台灣和大陸目前的關係是變得更緊張，沒什麼改變，還是更緩和？ ①更緊張 50% ②無改變 23% ③更緩和 5% ④無意見/未回答 22%
2. 就目前的狀況看，您認為大陸和我們的關係是敵對的，還是友善的？ ①敵對的 57% ②友善 8% ③不敵對也不友善 9% ④既友善也敵對 2% ⑤無意見/未回答 23%
3. 對於台灣的前途，您希望看到最後結果是統一呢還是獨立？ ①統一 41% ②獨立 33% ③維持現狀 4% ④順其自然 2% ⑤很難說 2% ⑥無意見/未回答 17%
4. 您贊不贊成台灣獨立呢？ ①非常贊成 18% ②還算贊成 24% ③不太贊成 21% ④非常不贊成 16% ⑤看情形 3% ⑥無意見/未回答 18%
5. 您認為不贊成台灣和大陸統一呢？ ①非常贊成 16% ②還算贊成 28% ③不太贊成 19% ④非常不贊成 15% ⑤看情形 5% ⑥無意見/未回答 17%
6. 您感覺自己是一個台灣人呢？還是一個中國人？ ①是台灣人 41% ②是台灣人也是中國人 8% ③是中國人 43% ④台灣人就是中國人 4% ⑤很難說 1% ⑥無意見/未回答
7. 您知不知道最近台灣旅客到大陸觀光發生了在船中被燒死的事情？ ①知道 96% ②不知道 4% (不問第8題)
8. 您認為台灣旅客在大陸旅遊被燒死的事件，會不會影響到兩岸之間人民的感情？ ①會 70% ②不會 20% ③無意見/未回答 10%

註：訪問日期1994年4月16日、17日，以台灣地區電話簿為清冊有效樣本1064人；  
因四捨五入，各題百分比之和未必正好是一百。

1. 請問您覺得台灣和大陸目前的關係是友好還是敵對？ ①友好 (13.4%) ②敵對 (34.3%) ③既友好也敵對 (16.1%) ④不友好也不敵對 (8.3%) ⑤不知道 (27.4%) ⑥拒答 (0.5%)
2. 請問您覺得目前兩岸交流的速度是太快、太慢、還是剛剛好？ ①太快 (41.2%) ②太慢 (11.4%) ③剛剛好 (25.7%) ④不知道/無意見 (21.5%) ⑤拒答 (0.2%)
3. 請問您對台灣未來與大陸的關係是傾向統一、獨立或維持現在的狀態？ ①統一 (22.2%) ②獨立 (14.7%) ③維持現狀 (44.3%) ④不知道/無意見 (18.6%) ⑤拒答 (0.2%)
4. 請問您認為目前兩岸經貿交流速度是應更加速、更謹慎或順其自然？ ①更加速 (6.7%) ②更謹慎(速度放慢) (40.1%) ③順其自然 (39.7%) ④不應有經貿交流 (1.8%) ⑤不知道/無意見 (11.5%) ⑥拒答 (0.1%)
5. 請問您認為目前兩岸文化科技方面的交流速度是應更加速、更謹慎或順其自然？ ①更加速 (27.1%) ②更謹慎(速度放慢) (18.1%) ③順其自然 (39.9%) ④不知道/無意見 (14.3%) ⑤拒答 (0.6%)
6. 千島湖事件之後，請問您贊不贊成政府暫停兩岸文教交流的決定？ ①非常贊成 (9.7%) ②贊成 (50.2%) ③不贊成 (23.4%) ④很不贊成 (0.6%) ⑤不知道/無意見 (15.6%) ⑥拒答 (0.5%)
7. 請問您認為政府暫停兩岸文教交流的決定能不能達成制裁中共的目的？ ①會 (21.4%) ②不會 (48.2%) ③不知道/無意見 (29.7%) ⑥拒答 (0.8%)
8. 請問您贊不贊成政府抵制赴大陸旅遊的決定？ ①非常贊成 (21.4%) ②贊成 (57.9%) ③不贊成 (9.6%) ④很不贊成 (0.3%) ⑤不知道/無意見 (10.2%) ⑥拒答 (0.6%)
9. 請問您認為政府抵制赴大陸旅遊的決定能不能達成制裁中共的目的？ ①會 (36.4%) ②不會 (39.8%) ③不知道/無意見 (22.8%) ⑥拒答 (1.0%)

製作單位：特案新聞中心民意調查組  
測驗地區：台灣地區

測驗時間：1994年4月14日、15日  
有效樣本數：1015人

\*大陸重要經濟指標資料(1994年1~6月)

項 目	單 位	實 績	比 去 年 同 期 增 長 %	備 註
國民生產總值	人民幣億元	16,599	11.6	
工業總產值	人民幣億元	19,789	18.8	
全社會固定資產投資額	人民幣億元	4,505	25.2	
其中：國有單位投資		3,081	37.5	
社會商品零售總額	人民幣億元		19.8	
進出口總額	億美元	976.0	25.4	
出口額		483.9	30.2	
進口額		492.1	21.2	
逆差		8.2		
城鎮居民人均生活費收入	人民幣元		35.0	扣除物價因素，實際增長9.4%
農村居民人均現金收入	人民幣元		32.1	扣除物價因素，實際增長13.3%

資料來源：中共『新華社』、1994.2.28報導、中共「國家統計局」公報資料

\830830\60001429.E

# 台灣、香港相關統計資料

項 目	單 位	統 計 數 字									備 註	資 料 來 源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兩岸經香港轉口貿易金額	百萬美元	1,103	956	1,516	2,721	3,483	4,044	5,793	7,407	8,689	民國83年1~5月共計3,686百萬美元	香港政府統計處
台灣地區與香港地區貿易總額	百萬美元						10,003	14,375	17,197	20,183	民國83年1~6月共計10,660百萬美元	財政部統計處
台港相互投資總額	萬美元	2,947	7,668	18,256	16,487	25,856	26,905	32,819	26,742	33,125	關於台灣與澳門相互投資數額，投審會未統計過，民國83年1~5月共計17,701萬美元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台灣地區與港澳地區往來人數(人次)	萬人次	28	28	30	56	104	144	154	192	213	民國83年1~7月共計114萬人次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①港澳同胞入境	萬人次	24	24	24	22	22	19	17	17	19		
②我方赴港澳	萬人次	4	4	6	34	82	125	137	175	194	我方赴澳門人數，僅係就出境申請書填報資料統計，不包括實際經香港轉赴澳門人數	

資料來源

- 香港於1993年為世界第八位貿易國家(地區)
- 行政院長連戰83、5、23在接見澳洲參眾兩院外交，國防暨貿易聯席委員會眾議員塞蒙士等人時表示目前我與香港關係密切，雙邊貿易佔我國貿易總值之23%，與大陸之間的貿易透過香港進行者，也佔9%至10%。
- 香港旅遊協會發表數據顯示，本年(83年)四月份因「千島湖慘案」，使我國訪港旅客減少八千六百人(我國赴港旅客四月份為十五萬七千人)，而抵制大陸之行動使中共損失五千萬美元之旅遊收益。

工商時報83、5、24

P.2  
港澳月刊第三十三期  
P.23

830830\60001429.E

[  ]

항공반환을 위한 영·중협정 (요약)

## 英·中協定 要約

1984年12月19日 調印되었으며, 1985年5月27日 北京에서 英·中兩國의 批准書가 交換됨으로써 그날자로 正式發效가 된 香港返還에 關한 英國과 中共間의 協定은 8個項의 「香港問題에 關한 英·中 共同宣言」(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과 第1, 第2 및 第3 附屬書(Annex I to the Joint Declaration, Annex II and Annex III), 그리고 英·中間에 交換된 英國側과 中共側覺書(United Kingdom Memorandum and Chinese Memorandum)로 構成되어 있다.<sup>44)</sup>

8個項의 共同宣言文 內容을 各項別로 簡略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英·中 共同宣言

英國과 中共은 歷史的으로 남겨진 香港問題를 協議를 通하여 妥當하게 解決하는 것이 香港의 繁榮과 安定에 有益하며, 兩國關係를 한층더 強化시키고 發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見解를 같이하여 兩國代表는 會議를 通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하기로 合意하였다.

1) 中共은 香港地域의 回復이 全中國人의 念願임을 宣言하며, 또한 1997年7月1日부터 香港에 對한 主權行使를 繼續하기로 決定하였음을 宣言한다.(香港島, 九龍, 新界地를 包含하여 以下 香港이라 한다.)

2) 英國은 1997年7月1日에 香港을 中共에 返還할 것을 宣言한다.

3) 中共은 香港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과 政策을 取할 것을 宣言한다.

- ① 中共은 香港에 對한 主權을 回復함에 따라 中共憲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香港特別行政區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SAR) 를 設定한다.
- ② 香港特別行政區는 外交, 國防을 除外한 高度의 自治權을 享有한다.
- ③ 香港特別行政區는 行政管理權, 立法權과 獨立된 司法權 및 終審權을 享有하며 現行法律은 基本的으로 變하지 않는다.
- ④ 香港特別行政區 政府는 香港住民들로 構成되며, 特別行政區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은 香港內에서의 選舉 또는 協議에 依據,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한다. 主要公務員은 香港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이 指名하고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하며 外國籍者도 雇傭될 수 있다.
- ⑤ 香港의 現行社會制度, 經濟制度 및 生活樣式은 不變하며 모든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고, 私有財產, 企業所有 그리고 外國人投資도 法에 依해 保護한다.
- ⑥ 香港特別行政區는 自由港과 別途 關稅地域으로서의 地位를 維持한다.
- ⑦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金融센터의 地位를 維持하며, 資本의 自由移動, 兌換貨幣로서 香港달러의 自由流通制度를 維持한다.
- ⑧ 香港特別行政區는 獨自的財政을 갖고 中共中央政府는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



⑨ 香港特別行政區는 英國 및 其他國家들과 相互有益한 經濟關係를 樹立하고 그들의 香港內 經濟的利益도 充分히 配慮한다.

⑩ 香港特別行政區는 「Hong Kong, China」의 名稱下에 外國, 地域, 또는 關係國際機構와 獨自的으로 經濟, 文化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고 適切한 協定을 締結할 수 있으며, 獨自的으로 香港出入 旅行證을 發給할 수 있다.

⑪ 香港特別行政區의 公安維持는 香港特別行政區 政府가 責任진다.

⑫ 前記한 中共의 香港에 關한 基本政策과 第1附屬書 內容은 中共의 香港關係 基本法에 規定될 것이며, 그것은 50年間 不變할 것이다.

4) 1997年 6月 30日까지의 過渡期間中の 香港에 對한 行政責任은 英國政府가 지며 中共政府도 이에 協力을 提供할 것을 宣言한다.

5)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과, 共同宣言의 效果的인 履行을 爲하여 英·中 共同連絡委員會 (Joint Liaison Group) 를 共同宣言發效와 同時에 設置한다. 本共同宣言의 第2附屬書規定에 따라 英·中 共同連絡委員會가 設立되며 그 機能을 다할 것이다.

6) 英國과 中共은 香港의 土地賃借 契約과 其他 關聯事項에 關하여 本共同宣言의 第3附屬書에 規定된 바에 따라 處理한다.

7) 英國과 中共은 本共同宣言과 附屬書內容 全部를 實施할 것에 合意한다.

8) 本共同宣言은 批准書交換日로부터 發效하며 批准書는 1985年 6月 30日以前에 北京에서 交換된다. 本共同宣言과 附屬書는 同一한 拘束力을 가진다.

## 2. 附屬書

第1附屬書는 「中共政府의 香港에 對한 基本方針, 政策의 具體的 說明」을 內容으로한 14個項과 第2附屬書는 「英·中 共同連絡委員會」에 關한 規定 13個項 및 第3附屬書는 「土地契約」에 關한 8個項으로 構成되어 있는바 各附屬書內容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 1) 第1附屬書

中共의 香港에 對한 基本政策에 關한 說明이다.

① 中共은 中共憲法 31條에 依하여 1997年7月1日부터 中共의 香港特別行政區를 設置하며, 中共 全國人民代表會議는 特別行政區基本法을 制定 公布하고 그後 社會主義制度和 政策을 實施하지 않고 香港의 既存資本主義制度和 生活樣式을 維持토록하며 50年間 變更하지 않을 것을 法律로 規定한다.

香港特別行政區는 中共中央政府의 直轄下에, 高度의 自治權을 享有하며 外交, 國防以外的 行政, 立法, 獨立司法權(終審權 包含)을 가진다. 中央政府는 第1附屬書 11項에 規定된 涉外事務를 獨自적으로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香港特別行政區에 賦與한다. 香港特別行政區의 政府와 立法機關은 香港現地人으로 構成되며 香港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은 現地에서 選舉 또는 協議를 通하여 選出하고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한다. 特別行政區 立法機關은 選舉를 通하여 選出되며, 行政機關은 立法機關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香港特別行政區는 中國語外에 英語를 使用할 수 있으며 中共의 國旗와 國章을 揭揚함과 아울러 區旗와 區章을 使用할 수 있다.

② 香港特別行政區 成立後 基本法과 相衝하는 法律 및 香港特別行政區 立法機關이 改正하는 法令을 除外하고는 現行法令이 繼續 維持된다. 特別行政區의 立法權은 香港特別行政區의 立法機關에 屬한다.

③ 香港特別行政區 成立後 香港特別行政區 裁判소가 終審權을 享有함으로써 發生한 變化를 除外하고는 그때까지 香港에서 實施되고 있던 司法體制는 그대로 維持된다. 香港特別行政區의 裁判權은 香港特別行政區의 裁判소에 屬하며 香港特別行政區 裁判所는 獨自的으로 裁判하며 如何한 干涉도 받지 않는다.

香港特別行政區의 檢察機關은 外部의 干涉을 받지 않고 刑事檢察活動을 主管한다.

④ 香港特別行政區成立後 그때까지 香港政府에 勤務하고 있는 公務員과 司法要員(警察包含)은 繼續勤務하며, 現在와 同一한 各種手當, 惠澤을 附與받는다.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現在雇用中인 外國人을 繼續雇用할수 있으며, 또는 追加雇用도 可能하다.

(但 警察部門을 包含한 政廳의 長官級 主要部署의 長과 一部 主要部署의 次席은 除外된다.)

⑤ 香港特別行政區의 財源, 豫算, 決算編成을 包含하는 財政事務를 獨自的으로 管理하며, 豫算·決算은 記錄을 爲하여 中央政府에 報告해야 한다. 中央政府는 香港特別行政區에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

⑥ 香港特別行政區는 香港特別行政區 發足以前에 取하고 있던 資本主義經濟制度와 貿易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며 貿易, 經濟政策을 獨自的으로 樹立할 수 있으며 獨自的 關稅制度를 維持한다. 國際機構 및 國際貿易協定參加가 可能하다.

⑦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金融센터의 地位를 維持하며 香港貨幣를 法定貨幣로서 發行하며 兌換이 可能하다.

⑧ 現行 海運管理와 經營은 繼續 維持되며 「Hong Kong, China」 名義로 船舶登記를 行한다.

⑨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 및 地域 航空센터로서의 地位를 維持한다. 中央政府로부터 特別許可를 받아 現行航空協定을 更新, 改正하고 協定이 없는 外國과는 暫定航空協定을 交渉, 締結할 수 있다.

⑩ 香港特別行政區는 香港特別行政區 發足以前의 教育制度를 持續시킨다.

⑪ 中央政府가 外交業務를 管掌함을 原則으로 하여 香港特別行政區 政府代表는 中共中央政府代表의 一員으로서 中央政府가 권장하는, 香港特別行政區와 直接關係가 있는 外交交渉에 參加할 수 있다. 香港特別行政區內 領事機構, 政府或은 半官機構를 設置할 境遇 中央政府的 許可를 얻어야 한다. 中共과 正式外交關係가 있는 國家들의 香港內 領事館은 繼續 維持可能하며 中共이 承認하지 않은 國家들은 非政府機構만을 設置할 수 있다.<sup>1)</sup>

⑫ 香港特別行政區의 治安維持는 香港特別行政區政府의 責任이며,

---

註 1) 香港內 外國公館地位에 關한 項.

附屬書 1 第 11 項下段에 規定된 香港內 外國公館地位에 關한 條項

Foreign consular and other official or semi-official missions may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th the approval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established in Hong Kong by states which have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of states having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either be maintained or changed to semi-official missions. States not recogni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only establish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The United Kingdom may establish a Consulate-General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防衛目的으로 中共中央政府에 依해 派遣된 香港特別行政區 駐屯軍은 特別行政區 內政에 干涉못한다. 2)

⑬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法律에 따라 香港特別行政區의 住民, 其他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한다.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香港의 既存法律에 規定되어있는 人身, 言論, 出版, 集會, 結社, 勞組의 組織과 參加, 通信, 旅行, 移轉, 罷業, 示威, 職業選擇, 學術研究, 信仰의 自由, 住宅不可侵, 婚姻의 自由와 家族을 自由로이 養育할 수 있는 權利를 繼續 維持토록한다.

누구든지 秘密法律相談을 할 수 있는 權利와 司法救濟를 得할 수 있는 權利를 享有하며 香港에서 既이 適用되고 있는 「民權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 社會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은 繼續 維持시킨다.

⑭ 香港에서 出生하였거나, 通常 繼續 7年以上 香港에 居住한 모든 中國人과 香港以外에서 出生한 그들의 中國籍의 子女, 通常 繼續 7年以上 香港에 居住하고 香港을 永久居住地로 하는 모든 其他人들과 香港에서 出生한 21才미만의 子女, 그리고 特別行政區 設置以前에 香港에만 居住權을 갖고 있는 모든 其他人들은 永住權을 取得할 수 있다.

---

註 2) 附屬書 1 第 12 項에 規定된 香港內 中共軍 駐屯問題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Military forces s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o be station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the purpose of defence shall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penditure for these military forces shall be borne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 2) 第2附屬書

### 英·中 共同連絡委員會에 關한 規定

① 共同宣言의 效果的 履行과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을 爲해 友好精神에 立却한 討議를 繼續하고 香港問題에 關한 兩國政府의 既存協力關係를 더욱 強化하는데 相互 同意하여,

② 兩國의 連絡, 協議, 情報交換의 必要上 英·中 共同連絡委員會設置를 合意했다.(以下 委員會)

### ③ 委員會 職責

a) 共同宣言實施에 關한 協議

b) 1997年의 圓滑한 政權移讓에 關한 事項의 討議

c) 雙方이 決定한 事項에 關한 相互 情報交換 및 討議

④ 委員會는 委員會設置日로부터 1997年 7月 1日까지의 期間의 前半期中은 다음 事項을 協議한다.

a) 特別行政區가 獨自의 關稅地域으로서의 經濟關係, 特히 GATT, MFA와 其他 國際協定에의 繼續 參加를 爲해 兩國이 取할 措置

b) 香港에 關聯되는 國際的權利 및 義務의 繼續適用을 爲해 兩國이 取할 措置

⑤ 委員會 設置日로 부터 1997年 7月 1日까지의 期間의 後半期中에는 다음 事項等を 協議한다.

a)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을 爲한 節次

b) 香港이 其他國家, 地域, 關聯國際機構와 經濟文化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고 協定을 締結하는 것을 돕기 爲한 措置

⑥ 委員會는 權力機關이 아니고 連絡機關이므로 香港의 行政에 介入하거나 監督하는 기능은 없다.

⑦ 雙方은 大使級 首席代表 1名과 各 4名의 委員을 指名 派遣한다.

⑧ 委員會는 英·中協定 發效와 同時에 發足, 委員會 駐在地는 1988年 7月 1日부터 香港을 本據地로 하여 2,000年 1月 1日까지 活動한다.

⑨ 委員會는 北京, London, 香港에서 每年 最少限 한번은 會議을 開催한다.

⑩ 委員會 委員은 前記三地點에서 相應한 外交特權과 免責權을 享有한다.

⑪ 委員會는 必要時 專門家그룹을 設置할 수 있다.

⑫ 委員會와 專門家그룹會議에는 專門家の 出席도 可能하다.

⑬ 委員會 實務節次는 附屬書 規定에 依하여 討議決定한다.

### 3) 第 3 附屬書

土地賃借契約에 關한 事項 및 其他關聯事項을 規定한 것이다.

① 共同宣言發效前에 賦與하였거나 또는 決定된 모든 土地賃借權과 그後 本附屬書 2, 3項에 依하여 賦與되고, 1997年 6月 30日以後까지 有效한 모든 土地賃借權은 1997年 以後의 香港特別行政區 政府에 依해 認定 保護된다.

② 短期 및 特殊用途契約을 除外하고 英國香港政府가 許可한, 期限이 1997年6月30日以前인 것으로서 延長權이 없는 土地 賃借契約은 借主가 願한다면 2,047年6月30日을 限度로 追加權利金 (Additional premium)을 支拂할 必要없이 賃借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 英國香港政府는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6月30日까지, 期間이 2047年6月30日以前의 新規土地賃借契約을 許可할 수 있다.

④ 英國香港政府가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6月30日까지 許可할 수 있는 新規借地는 每年 50헥타를 限度로 한다.

⑤ 1997年7月1日 前에는 英國香港政府가 許可한 土地契約에 定해진 借地使用條件의 修正을 繼續 許可할 수 있다.

⑥ 英國香港政府가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6月30日까지 土地去來에 依하여 得한 權利金 收入은 土地開發平均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二均等分하여 英國香港政府和 中共香港 特別行政區政府所有로 한다.

⑦ 土地委員會는 共同宣言發效와 同時에 即日 香港에서 發足한다. 委員會는 中共側과 英國側이 各各 指名한 同數의 公務員으로 構成하며, 双方 各政府에 責任을 진다.

⑧ 委員會 設置細則은 双方이 別途로 協議한다.

### 3. 英國側覺書

1) 1997年6月30日에 英國屬領市民 (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 = BDTC)인 者들은 1997年7月1日字로 同身分을 喪失한다. 그러나 이들도 비록 英國居住權은 없어도 英國政府가 發給한 旅券을 繼續 使用할 수 있는 適切한 地位를 維持할 수 있다.



2) 1997年7月1日 또는 그 以後에는 어떤 者도 BDTC資格을 얻을 수 없다.

3) 香港特別行政區 및 他地域의 英國領事는 前1)項에 言及된 者가 所持하는 旅券의 期限延長, 更新을 할 수 있다.

4) 上記 英國政府發給旅券所持者들은 第3國에서 英國政府의 領事保護를 받을 수 있다.

#### 4. 中共側覺書

1) 中共의 國籍法에 依해 모든 香港 中共同胞는 BDTC 旅券所持與 否와 關係없이 中共國民이다.

2) 香港의 歴史的 背景과 現實을 감안하여 中共政府는 1997年後에도 종전에 英國屬領市民(BDTC)이라고 불리던 香港中國人들이 外國旅行을 爲해 英國政府가 發行한 旅行證을 使用하는 것을 허용한다.

3) 前記中共國民은 香港內 또는 中共地域內에서 同旅行證所持 理由로 英國의 領事保護를 받을 수 없다.

## 중국·대만관계 현황과 교훈

---

---

인 쇄 : 1994. 12. 15

발 행 : 1994. 12. 16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2정책관실

☎ 720 - 2148  
725 - 0762

---

<비 매 품>